

소방법령Ⅳ

NFSA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목차

Contents

제1편

소방장비 관련 법령

소방장비 관련 법령	3
제1절 소방장비 관리법	3
제2절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69

제2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	145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배경	146
제2절 주요골자	147
제3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구성	147
제4절 이 법의 규정체계	148
제2장 총 칙	149
제1절 목적	149
제2절 정의	151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4
제3장 소방시설업	155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156
제2절 과징금	188
제4장 소방시설공사	190
제1절 설계	193
제2절 시 공	195

목차

Contents

제3절 감리	209
제3절의 2 방염	225
제4절 도급	225
제5절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238
제6절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239
제7절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240
제5장 소방기술자	244
제1절 소방기술자의 의무	244
제2절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247
제3절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253
제6장 소방시설업자협회	257
제1절 소방시설업자협회	257
제7장 보 칙	259
제1절 감독	259
제2절 청문	263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등	264
제4절 수수료 등	267
제8장 벌 칙	269
제9장 부 칙	276

목차

Contents

제3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1
제1절 총칙	281
제2절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284
제3절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286
제4절 구조·구급활동 등	304
제5절 보칙	319
제6절 벌칙	330

제4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관련법규	33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37

표 목차

Contents

[표 2-1]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규칙 제25조 관련)	253
---	-----

그림 목차

Contents

[그림 2-1] 소방공사업법 체계도	148
[그림 2-2] 소방시설업 등록절차	166
[그림 2-3] 소방시설업 개념도	191
[그림 2-4] 착공신고와 완공검사 흐름도	206
[그림 2-5] 하자보수보증 흐름도	208
[그림 2-6] 감리흐름도	223
[그림 2-7] 도급관련 흐름도	237
[그림 2-8] 과태료 부과 절차도	273

1

PART

소방장비 관련 법령

제1절 소방장비 관리법

제2절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소방장비 관련 법령

제1절 소방장비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소방청(장비총괄과) 044-205-76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소방본부·소방서·지방소방학교·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항공구조구급대·소방정대·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耐用年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4. 소방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추진
5. 소방장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소방장비관리 목표
 2. 시·도별 소방장비현황 및 소방환경분석
 3. 시·도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4. 시·도 간 소방장비의 공동사용 및 협력
 5. 소방장비의 조달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6. 그 밖에 시·도별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 관리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관리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개정 2022. 11. 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11. 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1. 15.〉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⑤ 그 밖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① 소방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방장비 인증의 취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면제) 소방청장은 인증대상 소방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6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이하 “인증소방장비”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증소방장비의 제조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징금) ① 소방청장은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하여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2.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한 경우 외에 소방장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득한 소방장비의 품명·규격·수량·취득경위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려는 경우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품목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품명·품목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장비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장비 규격 및 특정규격 등의 결정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방장비 선정 요청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성 및 구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다.

1.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2.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3. 소방장비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촉진

③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품질·물성(物性)·외관(外觀)·치수·수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거나 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소방장비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동일한 시·도의 다른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조회하여 동일한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해당 소방장비를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고, 특수한 사정으로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제28조(망실·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毀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29조(소방장비의 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운용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5.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 교육·훈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용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소방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소방장비의 사용이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기관 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 협력 등)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출동 및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소방청 또는 다른 시·도의 소방회전익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청장은 지원에 적합한 시·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발생 등에 관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사고를 보고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가 적정하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전문적·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검사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시·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5.〉
-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1. 15.〉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근거하여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가 사용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체·절단 등의 방법으로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가 내장된 소방장비를 불용 결정 후 폐기하는 경우에는 저장자료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다른 시·도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공무상 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의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제43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3.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소방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4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2. 11. 15.〉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직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직원

제11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9027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장비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성능을 확인받은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규격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규격으로 본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일부개정]

소방청(장비총괄과) 044-205-76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조(시·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3.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4.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5. 15.〉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 5. 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개정·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2023. 5. 15.〉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4., 2020. 12. 15., 2023. 5.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 5. 15.〉

[제목개정 2023. 5. 15.]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5. 15.〉

1. 기본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1. 1. 5., 2023. 5. 15.〉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기능·성질·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인증방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인증수수료 등)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명
2.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연월일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인증기관의 업무수행범위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1. 인증기관의 명칭·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 관리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의 구매·보급이 시급한 경우
2.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3. 해당 소방장비의 수요량이 적거나 규격 작성이 곤란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11.]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전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를」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가스·전기·화학·항공기·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

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전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2조(망실·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훈련
4.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시설·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

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화학차
3. 소방고가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장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 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조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2. 제3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5. 15.〉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3. 5. 15.〉

[제목개정 2023. 5. 15.]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 5. 15.〉

[제목개정 2023. 5. 15.]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12. 15.〉

제10장 보칙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1장 벌칙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65호, 2024.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1. 기동장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등
나. 행정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등
다. 소방선박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등
라. 소방항공기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소화용수장비	소방호스류, 결합금속구, 소방관창류 등
나. 간이소화장비	소화기, 휴대용 소화장비 등
다. 소화보조장비	소방용 사다리, 소화 보조기구, 소방용 펌프 등
라. 배연장비	이동식 송·배풍기 등
마.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액체형 소화약제, 기체형 소화약제 등
바. 원격장비	소방용 원격장비 등

3. 구조장비: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일반구조장비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등
나. 산악구조장비	등하강 및 확보장비, 산악용 안전벨트, 고리 등
다. 수난구조장비	급류 구조장비 세트, 잠수장비 등
라. 화생방 및 대테러 구조장비	경계구역 설정라인, 제독·소독장비, 누출물 수거장비 등
마. 절단 구조장비	절단기, 톱, 드릴 등
바. 중량물 작업장비	중량물 유압장비, 휴대용 윈치(winch: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장비를 말한다), 다목적 구조 삼각대 등
사. 탐색 구조장비	적외선 야간 투시경, 매몰자 탐지기, 영상송수신장비 세트 등
아. 파괴장비	도끼, 방화문 파괴기, 해머 드릴 등

4. 구급장비: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환자평가장비	신체검진기구 등
나. 응급처치장비	기도확보유지기구, 호흡유지기구, 심장박동회복기구 등
다. 환자이송장비	환자운반기구 등
라. 구급의약품	의약품, 소독제 등
마. 감염방지장비	감염방지기구, 장비소독기구 등
바. 활동보조장비	기록장비, 대원보호장비, 일반보조장비 등
사. 재난대응장비	환자분류표 등
아. 교육실습장비	구급대원 교육실습장비 등

5. 정보통신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분석에 필요한 장비

구분	품목
가. 기반보호장비	향온항습장비, 전원공급장비 등
나. 정보처리장비	네트워크장비, 전산장비, 주변 입출력장치 등
다. 위성통신장비	위성장비류 등
라. 무선통신장비	무선국, 이동 통신단말기 등
마. 유선통신장비	통신제어장비, 전화장비, 영상음향장비, 주변장치 등

6. 측정장비: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소방시설 점검장비	공통시설 점검장비, 소화기구 점검장비, 소화설비 점검장비 등
나.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	발굴용 장비, 기록용 장비, 감식감정장비 등
다. 공통측정장비	전기측정장비, 화학물질 탐지·측정장비, 공기성분 분석기 등
라. 화생방 등 측정장비	방사능 측정장비,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등

7. 보호장비: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구분	품목
가. 호흡장비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마스크류 등
나. 보호장구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등
다. 안전장구	인명구조 경보기,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탈출장비 등

8. 보조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분	품목
가. 기록보존장비	촬영 및 녹음장비, 운행기록장비, 디지털이미지 프린터 등
나. 영상장비	영상장비 등
다. 정비기구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등
라.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지휘 텐트, 발전기, 출입통제선 등
마. 그 밖의 보조장비	차량이동기, 안전매트 등

비고: 위 표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2] 〈개정 2023. 5. 15.〉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동기·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6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소방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소방장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실수·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7호	지정취소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정지기간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소방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2호	50만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3호	100만원
다. 실수·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4호	1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5호	100만원
마.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6항제6호	150만원

[별표 4] <개정 2023. 5. 15.>

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6조 제4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5] 〈개정 2023. 5. 15.〉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1.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

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계·설비 부문의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다. 나목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고급기술자 1명

2) 검사: 중급기술자 1명

3) 정밀점검: 중급기술자 2명

라. 표준공량은 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근무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수료 산정

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검사 및 정밀점검의 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표준공량과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산정한다.

다.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에 필요한 숙박비 및 식비는 가목의 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장비와 동일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200	400	500
나.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장비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항	100	200	30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6.] [행정안전부령 제403호, 2023. 5. 16., 일부개정]

소방청(장비총괄과) 044-205-76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제3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별자료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료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분야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청 또는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장비와 관련된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장비 설명서
4. 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 ②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의 방법) ① 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③ 제품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현장심사는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인증신청자가 스스로 신청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0조(소방장비인증서) 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 7.〉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3조(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제14조(인증표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제15조(전문검사반의 편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1.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 7.〉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 7.〉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영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3.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제2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

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03호, 2023. 5. 16.>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장비 인증표시 및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소방장비 인증표시 방법

가. 도안



인증번호:
인증기관:

나. 표시요령

- 1) 인증표시는 소방장비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 2) 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소방장비 또는 그 포장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인증표시 도안 색상은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 4) 소방장비의 표면에 인증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소방기관이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소방장비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2. 소방장비 인증의 면제확인 표시 방법

가. 소방장비 인증이 면제된 소방장비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그 포장의 표면에 "소방장비 인증 면제확인 증명" 표시를 한다.

나. 면제확인 표시요령은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 26.〉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6조 관련)

1. 기동장비

가. 기동장비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나.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장비는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등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의 수, 지역별 화재, 재난·재해 등 발생 상황 및 화재진압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3. 측정장비

측정장비 중 화재조사 및 감식장비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장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4. 보호장비

보호장비는 소방대원 개인을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유한다. 다만, 보호장비의 특성에 따라 소방관서 또는 출동대 기준으로 보유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그 밖의 소방장비

그 밖에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및 보조장비 등의 보유기준은 각 소방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 26.〉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자동차: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

나. 소방선박: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다. 소방항공기: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라. 그 밖의 소방장비

1)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일(「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 실시

2)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외의 소방장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량기산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펌프차 및 소방화학차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나. 소방사다리차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매년 1회 이상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가. 소방장비의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 나. 해당 소방장비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국적으로 유사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특별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이 결정되었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밀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조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판매자 (판매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리인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신청 소방장비	소방장비명	형식

「소방장비관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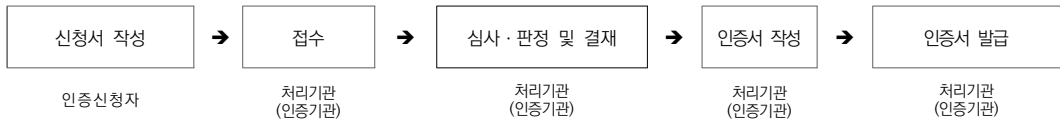
신청인(회사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합니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장비 설명서 4. 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수수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소방장비인증서

인증사업자 상호(회사명):

대표자:

주 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장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1. 소방장비명:
2. 형식:
3. 인증번호:
4. 인증기간:
5. 비고: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인증업무의 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 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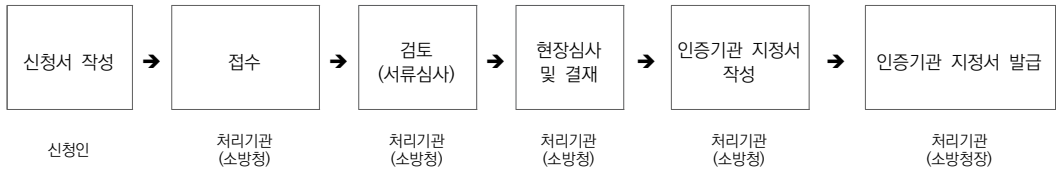
소방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인증업무의 범위: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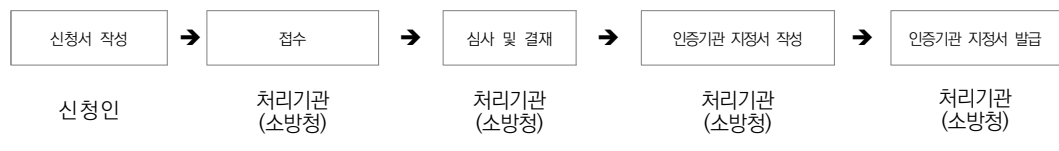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 청 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명	
	회사명	
대리인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대상제품	소방장비명	형식

면제확인 신청 사유

-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 장비 인증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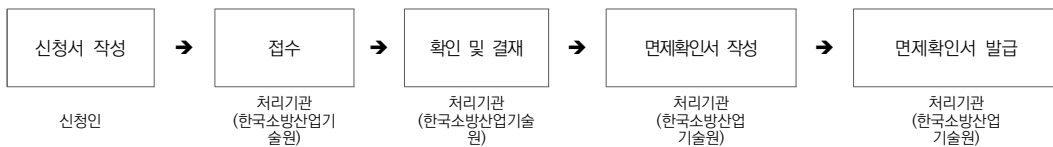
신청인(회사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합니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 장비 설명서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면제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명	
	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	소방장비명	형식
면제내용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이 상호 인정계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소방장비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50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 7.>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장비명: 물품분류번호: 내용연수:

제조사: 제조일: 관리기관:

[illegible]

1. 장비명: 소방장비 세부류 명칭을 기재한다.
2. 물품분류번호: 물품관리시스템상의 분류 및 식별번호(16자리)를 적는다.
3. 내용연수: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재하되, 소방장비 내용연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기재한다.
4. 입고수량: 재고관리를 위해 입고된 수량을 기재한다.
5. 출고현황: 출고대상에게 출고한 수량과 출고사유를 기재한다.
6. 재고수량: 입고수량에서 출고수량을 제외한 현재의 재고관리 수량을 기재한다.
7. 변동일자: 입고 또는 출고로 인해 재고수량이 변동된 날짜를 년, 월, 일로 기재한다.
8. 확인일자: 재고관리 의무가 있는 소방장비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서명을 기재한다.

[illegible]

년 월 일
 소방장비운용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일반 현황	보고자		보고일
	사고명		소방장비운용자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소방장비 현황	소방장비의 종류		소방장비의 용도
	제조업체		관리부서
	취득일		최종 검사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결과
점검현황	정기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자	
	정밀점검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기관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	중대사고 해당 여부 [] 사망자 발생 사고 []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한 사고 [] 해당 없음		사고 소방장비 보존 조치 필요 여부 [] 보존 조치 필요 [] 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현황(소방과 민간으로 구분)		
	② 사고내용 및 조치내용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비 고	(사고내용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사무소 소재지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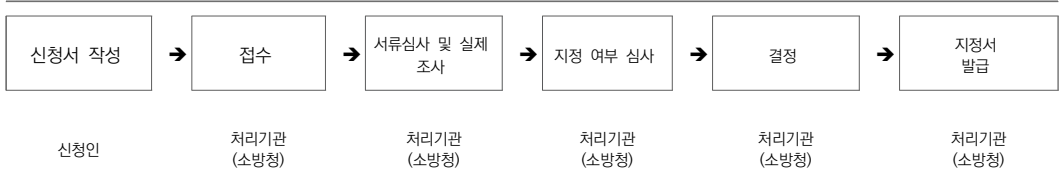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3. 5. 16.>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사무소 소재지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3. 5. 16.>

제 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

1. 상호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사무소 소재지: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업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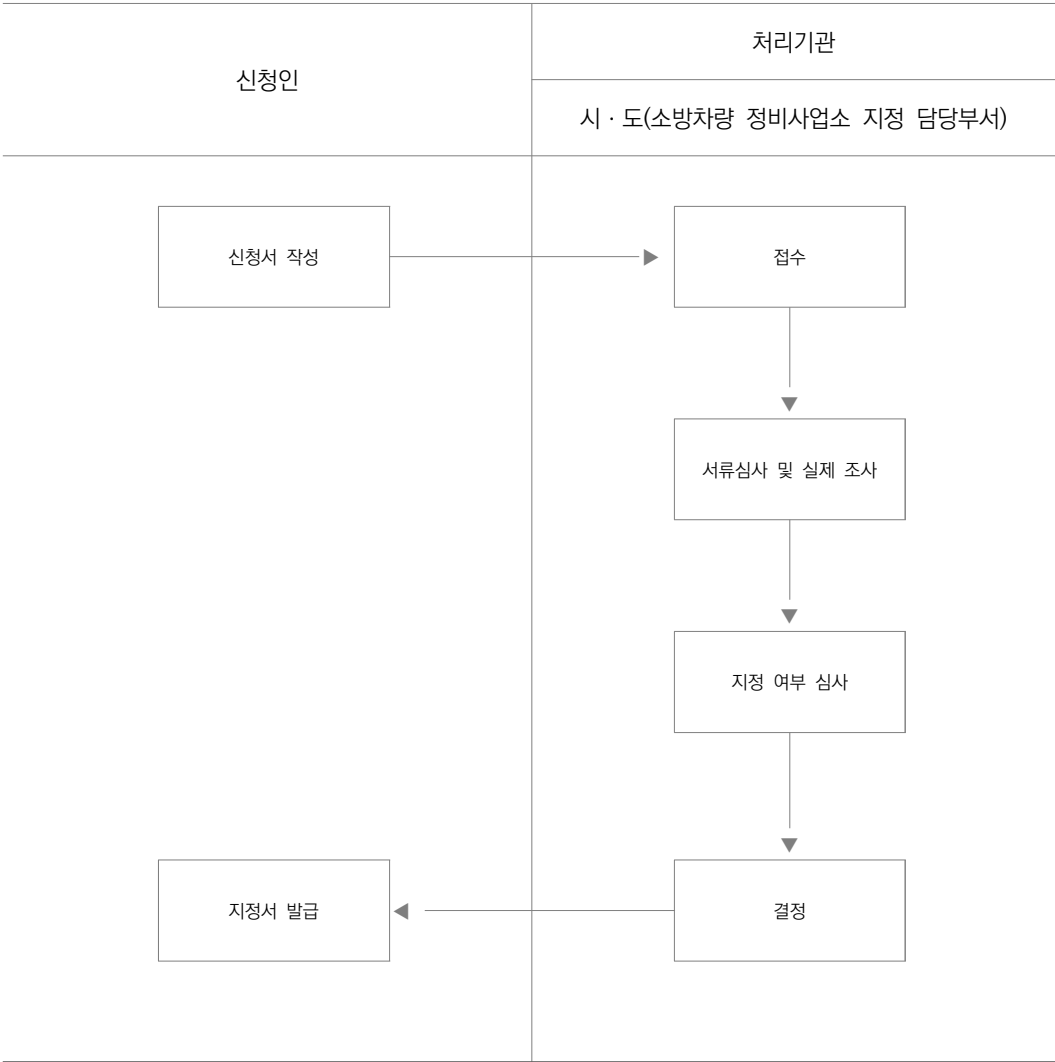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2절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3. 6. 26.] [소방청훈령 제330호, 2023. 6. 26., 일부개정.]

소방청(장비총괄과), 044-205-76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비를 말한다.
2. "기본관리"란 소방장비의 보관, 세척, 외관 점검, 기본정비 위주로 소방장비운영자가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3. "전문관리"란 소방장비의 검사대행, 정밀점검, 전문정비, 검·교정 등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부서, 전문기관 및 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4. "소방장비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란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운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장비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보조인력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해당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법 제8조의 소방장비 분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훈련 등 담당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보강 제안, 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 본래의 성능

을 발휘하도록 하여 소방업무 수행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 장비의 기본제원과 예방점검, 정비 및 조작, 세척·보관 요령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

9.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2조의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유지관리 체계) ①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도의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
2.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재고품 확보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
3. 장비별 관리자 및 운용자 지정 등 유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
4. 제조사, 전문기관의 점검·정비 등 조치에 대한 사항
5. 매뉴얼의 현행화 및 준수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관리와 전문관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 사항이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 장비의 보유현황, 운용자의 지정, 인계인수 및 장비 조작, 점검·정비 및 훈련, 전문관리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는 기본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서별 업무범위) ①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관리 여건, 소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업) ①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인증규격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 시·도 소방본부의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8조(소방장비의 구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규격결정)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방장비 시연회를 통하여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 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시연회에 출품된 소방장비와 납품검사 대상 소방장비의 디자인, 부속품 등 품질을 비교검사할 수 있다.
- ③ 법 제21조제2항의 전문검사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부록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장비 유지·관리) ① 소방장비는 법 제22조부터 제28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별로 정리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매뉴얼의 작성) ① 매뉴얼의 작성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은 사용범위를 고려하여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2. 제1호의 매뉴얼 외에 소방기관에서 운용 중인 매뉴얼은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작성한다.
3. 매뉴얼을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사의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서 제시한 기본제원, 성능 및 제조사 및 전문관리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등
2. 예방점검 요령 및 고장에 대한 조치
3.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 세척 등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사항
4. 현장 활용 사례 및 조작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5. 매뉴얼의 제정·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6. 그 밖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장비
2. 전기, 유류 등을 연료로 하는 동력원이 부착된 장비로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장비
3.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장비
4. 장비의 조작, 예방점검 등이 복잡하여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장비
5.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④ 매뉴얼의 형식은 서면, 영상,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매뉴얼의 운영) ① 관리부서에서는 매뉴얼 현황, 작성 범위와 형식의 세부 규정, 관리부서의 지정현황, 현행화 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 운영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 소방본부 관리부서는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시·도의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및 실무 활용성 등의 검토 확인한 후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2.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시·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에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등록 전에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매뉴얼의 삭제, 추가 보장 등 변경된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따른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교육·훈련에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재고)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6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6에서 정한 소방장비 외의 소방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를 보유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창고 등에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및 전출 등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개인별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대형재난의 대응, 장비의 교체로 인한 사전 지급 등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소방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장비별로 제조사에서 정한 보관요령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소방장비를 창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수리가 필요한 장비, 불용 대상 장

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절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시간 및 예측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 장비의 경우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⑦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방장비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점검 주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사에서 정한 점검 주기를 따를 수 있다.
- ③ 운전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 및 관리자는 제4조의 유지관리 체계에 따른 기본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정비 의뢰 필요성을 정비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운영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장비의 세척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오염된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세척은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오염의 방지 및 세척·살균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보호장비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사 내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기록관리) ①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관리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후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방장비의 기록·관리 및 확인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 제3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소방장비의 처분 등

-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의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용심의회의 불용 결정 없이 우선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를 담당한 관리자 및 운용자는 폐기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세척으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기호흡기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용기에 대한 파기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 조건과 방법을 정한 경우
 3. 화생방(CBRN) 상황에서의 노출 등 긴급 폐기가 필요하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경우
- ④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업체)에 폐기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의 저하, 오염의 누적 등 상당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절단·해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및 전시(展示) 등의 목적(이하 "특정 목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외의 방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불용 이후 1년마다 당초의 특정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매각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광등, 사이렌, 결합금속구, 무선통신장치 및 AVL 단말기 등 주요 장치와 관창, 소방호스 등 적재장비 및 무선표출부호 등 보안 관련 자료 등의 제거
 2.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소방표지와 소방장비 기본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에 따른 반사시트, 기관표시, '119' 로고 등의 제거
 3. 제2호의 표지, 반사시트 등을 제거한 부위를 '백색'으로 도색
 4. 그 밖의 소방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 표지, 표식 등의 제거
- ⑦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후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자로 하여금 폐차 과정에 입회하여 폐차 결과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 기준)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소방환경에 따라 소방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0호, 2023. 6.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장비 유지관리 체계(제4조 관련)

구 분	기본관리(현장 대원 수행)	전문관리 (전문기관 수행)
공통사항	- 현장에서 대원이 수행하는 관리로 장비의 검사, 보관, 세척, 외관 점검과 작동기능 확인 등의 관리 - 제조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소모품 교체, 오일류 보충 등 소규모 점검·정비 -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사용자가 수행 가능한 사항의 점검	- 기본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검사, 점검·정비 등에 대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자격자가 수행하는 관리 - 제조사 또는 제조사 지정 서비스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부품 교체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의 검사·점검·수리 -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제조사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 가능한 점검항목
소방자동차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일일 및 주간 점검 - 소방사다리차(고가 굴절),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및 그 밖의 소방차 - 전조등, 필터류, 오일류 등 자가(自家) 정비가 가능한 소모품의 교환 등	「소방장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리 기준으로서 기본관리 외의 사항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밀점검, 특별점검 등 - 특장 제조사만 가능한 점검·정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점검 - 외관·기능, 위생 상태의 점검 - 제조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자가(自家) 점검, 공기호흡기와 헬멧 등의 소모품 교체 등 소규모 정비	- 부품 등의 교체를 위한 해체·분리 등 기술이 필요한 정비 - 제조사에서 인증받은 사람이 수행하는 부품(소모품) 교체 등의 정비
측정용 장비	사용자가 수행 가능한 전원부, 계기판, 측정 결과의 일관성 등을 위한 점검 및 각종 필터류의 교체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검·교정

〈비 고〉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제6조 관련)

1. 관리부서

- 가. 연간 소방장비 교체·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 나.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주관, 통계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등 업무 총괄에 대한 사항
- 다.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및 입력현황 현행화 등에 대한 사항
- 라. 소방장비 교육·훈련 여건의 조성에 대한 사항
- 마. 그 밖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장비 분야에 대한 유지·관리

2. 소관부서

- 가. 담당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보강 계획의 제안에 관한 사항
- 나. 소관 장비의 구매요구, 납품검사, 배분,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소관 장비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및 교육 기자재 구입 예산 확보 등
- 라. 소관 장비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및 통계 관리
- 마. 그 밖의 소관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관계

- 가. 관리부서와 소관부서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및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소관부서의 조정 또는 지정은 소방장비의 주용도, 사용빈도, 관리효율성, 관리 사각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 고〉

이 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 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시·도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 나. "소방기관의 장"이란 소방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장, 시·도 소방학교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 다. "소방장비의 분류"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동장비, 화재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 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의 구분을 말한다.
3. (특정규격 작성대상 장비 결정 시 검토사항)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특정규격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필요성
 - 나. 소방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정규격의 필요성
 - 다. 소방장비의 품질 향상 필요성
 - 라. 소방장비를 활용하는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성
 - 마. 사용 중인 동종의 소방장비와의 호환 필요성
4. (소방장비 규격심의회 설치 등)
 - 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소방장비 규격심의회(이하 "규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규격심의회 위원 임명·위촉)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비관리 및 사업(운용)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심의하려는 소방장비의 분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규격심의회 운영 등)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소방장비 규격서의 작성 및 평가·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규격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 또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의 경우 규격심의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 규격심의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및 결정
- 2)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소방장비의 시연회 및 기술사항 검토
- 3) 구매하는 소방장비의 선호도 조사
- 4)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입찰서)의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규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규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규격에 포함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의 타당성
- 2) 특정 업체만 생산·제조 또는 납품 할 수 있는 특정규격(특정 상표 또는 특정 모델의 규격) 결정의 타당성
- 3) 구매 소방장비의 생산 가능 여부 등 납품의 신뢰성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규격심의회 구성)

가. 규격심의회 회의는 "5의 가"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소방장비 분류별 또는 품목별로 적정한 비율을 정하여 구성한다.

나. 규격심의회의 업무 중 제안서(입찰서) 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규격심의회를 개최하는 소방기관의 자체 감사·감찰부서의 직원을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 규격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8. (규격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가. 규격심의회 위원장은 규격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리한다.

나. 규격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규격서의 점검 등) 규격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적법성·타당성 등의 감사·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자치법규에 따른 일상감사

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심사

10. (위원의 제척·회피)

가. 규격심의회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 (위원의 임명·위촉 해제) 소방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10의 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2. (소방장비 시연회)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작성 및 결정전에 소방장비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시연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구매 관련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
- 2)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와 관련한 현장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 3) 그 밖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운용 역량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나. 소방기관의 장은 시연회 개최 7일 전까지 시연회 일시, 장소, 구매하고자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및 참가 신청방법을 시연회 개최 기관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일 2일 전에 참가 희망업체 접수를 마감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은 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공문서 등의 방법으로 참가 희망 업체명과 장비명을 접수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시연회 개최 전 참가 희망업체 수에 따른 전시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분류 또는 종류별로 전시 공간을 따로 할 수 있다.

13. (소방장비 선정요청 방법)

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을 관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나. 소방장비 선정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방장비 규격서
- 2) 소방장비 단가표
- 3) 계약 특수조건

14. (소방장비 선정협의회) 소방장비 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시·도에서 선정 요청한 소방장비의 규격 결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종합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격 결정, 제안서의 심사 및 적격자 선정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장비 선정과 관련한 의결사항

15. (선정협의회 구성)

- 가. 선정협의회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청 소속직원, 선정 요청한 소방기관의 소속직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나. 선정협의회에는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직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다. 선정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방청 소방장비 선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 라. 선정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소방장비 계약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마. 선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방장비 선정 건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16. (위원의 위촉)

- 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위촉하여야 한다.

- 나.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과 업무 중 얻게 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다. 소방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공문으로 위촉장을 대신할 수 있다.
- 라.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을 제5호 서식의 위원 명부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17. (회의록 및 의결서)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제6호 서식의 의결서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8.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회의 참석 요구
 - 나. 현지 조사
- 19.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규격심의회 및 선정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비용·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3의 서식 제1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

※ 진단내용()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 체크사항()의 해당되는 곳에 √표

1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 관련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3	()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4	()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5	()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의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2호]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
5. ()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

년 월 일

성명 : (서명)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3호]

승 낙 서

본인은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소방기관장) 귀하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택 주소			자택전화	
소속/직위			직장전화	
직장 주소			직장FAX	
E-Mail			이동전화	
년월일	학 력 사 항		전 공	
년월일	경 력 사 항		발령기관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4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 .

귀하를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소방기관장)

직인

※ ()란에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illegible]

210 mm × 297 mm(백상지 80 g/m²)

[별표3의 서식 제6호]

의 결 서

회의명	위원회명		일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위원장 외 명		
	이해관계자			
	간 사			
의결내용				
심의 · 의결 사항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3의 서식 제7호]

회 의 록

회의명	위원회명		일 시	
	제 목		장 소	
참석자	참석위원			
	이해관계자			
	간 사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표 4]

전문검사반 편성 및 운영 기준(제10조 관련)

1. 전문검사반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사람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하여 편성하고 제1호 서식의 명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문검사반의 반장은 소방기관의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전문검사반은 반장이 전문검사반 운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전문검사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반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반원의 제척·회피)
 - 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반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반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 3) 반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반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나. 반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 (반원의 임명·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 다. 직무 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반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 가. 반장은 관련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반장은 심의안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반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전문 검사반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비밀보호의 의무)

- 가. 반원은 전문검사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나. 전문검사반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반장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반원은 회의 전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교육 등) 소방관서의 장은 전문검사반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비용·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킴을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전문검사반의 업무)

- 가. 반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서면으로 검사·검수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검사반을 소집하여 검사·검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참여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문검사반은 "가"에 따른 검사·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전문검사반은 검사·검수 결과가 계약 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합격판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전문검사반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성검사를 실시한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검사 준비)

가. 전문검사반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1) 계약서 및 소방장비의 규격서 등 검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
- 2) 계약조건 또는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서 및 해설서
- 3) 검사업무에 필요한 장비 또는 그 밖의 자료

나. 전문검사반은 검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참고자료와 보조인력 및 검사기구 등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검사장소) 소방장비의 검사 장소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반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이나 성능 확인이 곤란할 경우

나. 장비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소요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다. 시험 운전 조건부 계약으로 성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12. (서류확인)

가.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소방장비를 납품할 때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서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전문검사반은 수입 장비를 검사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수입신고필증 또는 선적서류 등 정상 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2) 수입허가서, 시험성적서 등에 적힌 제품 기준과 구매 규격서와의 부합 여부. 다만, 시험성적서 등으로 구매물품의 규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계약상대자가 "가"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문검

사반은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그 사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전수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과 관련되어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소방장비
- 2) 검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어 전수검사의 효용성이 큰 경우
- 3) 시험운전부조건의 소방장비로써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전문검사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4. (견본검사)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견본 검사를 할 수 있다.

- 가.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때
- 나.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일 때
- 다.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
- 라. 그 밖에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

15. (중간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적합성, 제작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규격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나. 전문검사반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사 결과 소방장비의 규격서 및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요구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시정기한을 포함한 시정조치 계획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전문검사반은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확인하거나 이 기준 제17호에 따른 납품 검사에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다.

16. (이화학 시험)

가. 전문검사반은 시험능력의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기와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이화학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최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전문검사반은 시험대상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화학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인 경우
- 2)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경우
- 3) 국내에서 이화학 시험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이거나 신기술개발 등으로 국가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써 자체 이화학분석 결과 합격된 경우

17. (납품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관능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납품 장비가 계약 조건 및 규격서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검사를 실시한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중간검사에서 시정 조치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문검사반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소방장비를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19조에 따라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소방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재검사)

가. 전문검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 1)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한 경우
 - 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 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5) 계약상대자가 최초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6)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소방기관의 장은 "가"에 따른 재검사로 인하여 소방장비의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 2) 소방관서의 책임으로 납품·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9. 전문검사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취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전문검사반은 검사차량과 제3호 서식의 검사장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의 서식 제1호]

전문검사반 명부

연번	내/외부	위촉일	해제일	소 속	직위·계급	성 명	보유자격	장비분야	비고

[별표 4의 서식 제2호]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구매사업」의 전문검사반원
임명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 구매사업」의 전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
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전문검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

[별표 4의 서식 제3호]

전문검사반 검사장비 보유기준

(단위 : 개)

순	품 목	규 격	용 도	수량
1	도막측정기	0 ~ 1,000um	도장상태검사	1
2	버니어캘리퍼스	디지털, 길이 30cm 이상	두께·깊이 측정	1
3	줄자	50m이상	길이 측정	1
4	클램프테스터	(AC/DC 겸용)	전기장치 측정	1
5	디지털테스터기	(AC/DC 겸용)	전기장치 검사	1
6	풍향계	0 ~ 30m/s	풍속 측정	1
7	음량계	30 ~ 100dB	사이렌음 측정	1
8	조도계	0.1 ~ 50,000lux	램프 밝기 측정	1
9	수평계	자석식, 디지털겸용	기울기 측정	1
10	거리측정기	레이저형	방수거리측정	1
11	적외선온도측정기	-20℃ ~ 300℃	비접촉식 온도측정	1
12	스톱워치	초시계형	시간 측정	1
13	디지털카메라	1200만 화소 이상	기록보존용	1
14	전자저울	디지털식	검사용	1
15	소형랜턴	10W 이상	검사용	2
16	전동드라이버	충전식	분해 조립용	1
17	당도계	메스실린더 등 포함	폼농도 측정	1
18	회전속도측정기	디지털방식	구조장비 검사	1
19	유압측정기	800bar 이상	유압장비 검사	1
20	압력계	80bar 이상	소방펌프 점검	1
21	연성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시	소방펌프 점검	1
22	공구세트	박스포함	분해 검사용	1
23	온도습도측정기	대기 측정용	장비검사용	1

[별표 5]

소방장비 매뉴얼의 고유번호(제13조 관련)

1. 번호구성

가. 장비의 명칭

나. 장비종류

다. 모델번호 : 해당 장비의 모델번호(문자와 숫자 등으로 표기)

라. 제조사 : 해당 장비의 제조사

마. 작성연도 : 매뉴얼의 작성연도

바. 개정횟수 : 01, 02, 03 등으로 표기한다.

2. 매뉴얼 고유번호의 표기

가. 시·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부여하는 매뉴얼의 고유번호

□	- 장비의 명칭 -	□□□□	-	□□□□	-	□□□□	-	□□
↓		↓		↓		↓		↓
장비종류		제 조 사		모델번호		작성연도		시·도 번호

나.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서 부여하는 매뉴얼의 고유번호

□	- 장비의 명칭 또는 群 -	□□□□	-	□□□□
↓		↓		↓
장비종류		작성연도		작성연번

〈비 고〉

- "장비의 명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 중 품목상 명칭을 말한다. 다만, 분류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장비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대분류에 따라 연번을 부여한다.
: 기동장비 1, 화재진압장비 2, 구조장비 3, 구급장비 4, 정보통신장비 5, 측정장비 6, 보호장비 7, 보조장비 8, 소방장비의 구성품 9
- "시·도 번호"는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의 순서대로 00번부터 20번까지의 번호를 말한다.

4. 작성예시

- 1) "○○社에서 KKK013 모델번호로 제작한 특수방화복의 매뉴얼을 2020년에 서울에서 작성"한 경우 고유번호는 "7-특수방화복-○○社- KKK013-2020-03"으로 표기
- 1) "특수방화복의 매뉴얼을 2020년에 소방청에서 최초로 작성"한 경우 고유번호는 "7-특수방화복-2020-01 "으로 표기, 다만 작성연번은 작성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별표 6]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제14조 관련)

1.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일련 번호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통신장비(이동국)	소방차량 장착용 20W 이상	대	1
2	결합금속구(연결)	접합부: 암65mm×암65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접합부: 수65mm×수65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접합부: 암65mm×수40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2
3	결합금속구(Y형)	접합부: 암65mm×(수40mm×2),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4	소방호스	65mm×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10
		40mm×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10
		중계용, 접합부: 65mm×2.5m 이상	개	1
		흡수용, 10m이상, 스트레이너 포함	개	1
5	호스 스페너	지름: 40mm, 65mm, 재질: 알루미늄	개	각 2
6	소화전 렌치	지상식 소화전·흡수관·중계관 등 개폐용	개	1
7	소화전 핸들	지하식 소화전 개폐용, 길이 1,000mm 이상	개	1
8	스탠드 파이프	지하식 소화전 연결용	개	1
9	관창	피스톨 관창 40mm, 65mm	개	각 2
		폼용, 40mm, 65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각 1
		폼(중발포)용, 40mm, 65mm 재질 : 스테인리스	개	각 1
10	소방호스 보호틀	허용 하중: 10톤 이상	개	1
11	지렛대	90mm 이상	개	1
12	소방차정비용 공구	소방자동차 점검·정비용 공구 세트	개	1
13	갈고리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4	천장 파괴기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5	도끼	치수: 570mm 이상, 중량: 1.5kg 이하	개	1
16	삽	길이: 1m	개	1
17	교통신호봉	가시거리 500m 이상	개	1
18	휴대용 탐조등	출력 35W 이상	개	1
19	연기투시랜턴	출력 10W 이상	개	1
20	복식 사다리	높이: 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21	전선 릴	AC 250V, 3.5SQ 이상×3C=30m 이상, 누전차단기 부착형, 2구 콘센트 방수(접지)형	개	1
22	수중펌프	모터성능 1HP 이상	대	1
23	소화기	ABC급 3단위, 3.3kg, 축압식	개	1
24	폼 공급펌프	220V용, 이중절연, 수동식 또는 전기모터 구동식	개	1
비고 1. 관창 중 폼(중발포)용 : 소방물탱크차의 적재기준에서 제외				
2. 폼 공급펌프 : 소방물탱크차의 적재기준에서 제외				

2. 소방고가차

일련 번호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1	통신장치(이동국)	소방자동차 장착용 20W 이상	대	1
2	잭 실린더 받침	50cm 이상×50cm 이상×1cm 이상	개	4
3	높이 측정자	4.5m 이상 삼입식	개	1
4	구조용 로프	11mm×100m	롤	1
5	안전벨트	상·하 일체형, 자동권취형 확보줄(카라비너 포함)	개	3
6	경량 구조헬멧	머리 보호용	개	3
7	안전안경	눈 보호용	개	3
8	절연봉	재질: 절연성, 규격: 3단 4m 이상, 사용 전압: 22,000V 이상	개	1
9	갈고리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0	천장 파괴기	길이: 2.7m 이상, 재질: 알루미늄	개	1
11	도끼	치수: 570mm 이상, 중량: 1,5kg 이하	개	1
12	호스 스페너	지름: 40mm, 65mm, 재질: 알루미늄	개	2
13	소화기	ABC급 3단위, 3.3kg, 축압식	개	1
14	연기투시랜턴	출력 10W 이상	개	1
15	소방호스 보호틀	허용 하중: 10톤 이상	개	1
16	전선 릴	AC 250V, 3.5SQ이상×3C=30m 이상, 누전차단기 부착형, 2구 콘센트 방수(접지)형	개	1
17	거리 측정기	전개 높이 측정용, 측정거리 200m 이상	개	1
18	교통신호봉	가시거리 500m 이상	개	1
19	공기안전매트	형식승인제품일 것	세트	1

3. 조명배연차

일련 번호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통신장비(이동국)	소방자동차 장착용 20W 이상	대	1
2	결합금속구(연결)	접합부: 암65mm×암65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3		접합부: 수65mm×수65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4		접합부: 암65mm×수40mm,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5	결합금속구(Y형)	접합부: 암65mm×(수40mm×2),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개	1
6	소방호스	65mm×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5
		40mm×15m, 형식승인제품일 것	개	5
		중계용, 접합부: 65mm×2.5m 이상	개	1
7	호스 스페너	지름: 40mm, 65mm, 재질: 알루미늄	개	각 2
8	소화전 렌치	지상식 소화전·흡수관·중계관 등 개폐용	개	1
9	소화전 핸들	지하식 소화전 개폐용, 길이 1,000mm 이상	개	1
10	스탠드 파이프	지하식 소화전 연결용	개	1
11	관창	40mm, 65mm	개	각 1
12		폼용, 40mm, 65mm	개	각 1
13	교통신호봉	가시거리 500m 이상	개	1
14	연기투시랜턴	출력 10W 이상	개	1
15	소화기	ABC급 3단위, 3.3kg, 축압식	개	1
16	전선 릴	AC 250V, 3.5SQ이상×3C=30m 이상, 누전차단기 부착형, 2구 콘센트 방수(접지)형	개	1

4. 구급차

연번	용도 대분류	용도 중분류	장비명	구급차 필수 적재장비(●)
1	환자평가	신체검진	혈압계(커프: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
2	환자평가	신체검진	체온계	●
3	환자평가	신체검진	검안라이트	●
4	환자평가	신체검진	청진기	●
5	환자평가	신체검진	혈당측정기	●
6	환자평가	신체검진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 (측정탐침자: 성인용, 소아용)	●
7	환자평가	신체검진	호기말 이산화탄소측정기	-
8	환자평가	신체검진	환자감시장치(SpO2 포함)	●
9	환자평가	신체검진	일산화탄소 및 메트헤모글로빈측정 장비(CO/Met-Hb)	-
10	환자평가	신체검진	소아신장측정기(체중, 사용장비 크기 및 약물량 측정 기능 포함)	-
11	환자평가	신체검진	동공반응 측정기	-
12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입인두기도기 (40,50,60,70,80,90,100mm)	●
13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코인두기도기(20,22,24,26,28,30,32fr)	●
14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후두경세트(기도삽관튜브, 튜브고정장치, Margil겸자, stylet등포함)/ (3,4,5,6,6.5,7.,7.5mm)	●
15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성문외기도유지기(성인용, 소아용)	●
16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비디오후두경	-
17	응급처치	기도확보유지	기도삽관 유도기	●
18	응급처치	호흡유지	백밸브마스크(성인용)	●
19	응급처치	호흡유지	백밸브마스크(소아용)	●
20	응급처치	호흡유지	백밸브마스크(영아용)	●
21	응급처치	호흡유지	비강캐놀라(성인용, 소아용)	●
22	응급처치	호흡유지	안면마스크(성인용, 소아용)	●
23	응급처치	호흡유지	비재호흡마스크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
24	응급처치	호흡유지	자동식산소소생기(고정용)	●

연번	용도 대분류	용도 중분류	장비명	구급차 필수 적재장비(●)
25	응급처치	호흡유지	자동식산소소생기(휴대용)	●
26	응급처치	호흡유지	의료용분무기(Nebulizer)	●
27	응급처치	호흡유지	전동식의료용흡인기(휴대용)	●
28	응급처치	호흡유지	휴대용인공호흡기(Portable Ventilator)	-
29	응급처치	호흡유지	호흡량 측정기	-
30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자동심장충격기	●
31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자동심장충격기 패치(성인용, 소아용)	●
32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고급형 심장충격기 (12lead ECG, SpO2, ETCO2, NIBP, 인쇄)	-
33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고급형 심장충격기 패치 (성인용, 소아용)	-
34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가슴압박품질측정기	-
35	응급처치	심장박동회복	기계식가슴압박장비	-
36	응급처치	순환유지	수액연결선	●
37	응급처치	순환유지	정맥주사바늘	●
38	응급처치	순환유지	주사기(30ml 포함)	●
39	응급처치	순환유지	3방향 수액밸브	-
40	응급처치	순환유지	수액연장선	-
41	응급처치	순환유지	정맥주사바늘 고정테이프	-
42	응급처치	순환유지	혈관검출기	-
43	응급처치	순환유지	자동식 수액펌핑기	-
44	응급처치	순환유지	의료용 가온기	-
45	응급처치	외상처치	경추보호대(성인용, 소아용)	●
46	응급처치	외상처치	영아용 경추보호대(척추고정장비)	●
47	응급처치	외상처치	척추보호대(일체형)	●
48	응급처치	외상처치	긴척추고정판	●
49	응급처치	외상처치	머리고정대	●
50	응급처치	외상처치	구출고정장치	●
51	응급처치	외상처치	부목(연성)	●
52	응급처치	외상처치	부목(경성)	●

연번	용도 대분류	용도 중분류	장비명	구급차 필수 적재장비(●)
53	응급처치	외상처치	골반고정밴드	-
54	응급처치	외상처치	거즈	●
55	응급처치	외상처치	환자 팔고정대	●
56	응급처치	외상처치	멸균장갑	-
57	응급처치	외상처치	비멸균장갑	●
58	응급처치	외상처치	비닐장갑	●
59	응급처치	외상처치	지혈처치세트 (지혈대, 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등)	●
60	응급처치	외상처치	구급용 가위	●
61	응급처치	외상처치	붕대	●
62	응급처치	외상처치	반창고	●
63	응급처치	외상처치	구급장비 가방	●
64	응급처치	외상처치	견인부목(성인용)	-
65	응급처치	외상처치	견인부목(소아용)	-
66	응급처치	외상처치	화상처치세트 (습윤콜로이드, 화상연고, 멸균거즈 등)	●
67	응급처치	분만처치	분만처치용품	-
68	환자이송	환자운반	주들것(차량용, 헬기용, 선박용)	●
69	환자이송	환자운반	전동식 주들것	-
70	환자이송	환자운반	분리형 들것	●
71	환자이송	환자운반	가변형 들것	-
72	환자이송	환자운반	들것(계단이송용 또는 의자식)	-
73	환자이송	환자운반	영아이송장치	-
74	환자이송	체온유지	환자시트	●
75	환자이송	체온유지	보온용모포	●
76	구급의약품	의약품	니트로글리세린(구강용)	●
77	구급의약품	의약품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78	구급의약품	의약품	포도당(수액용 5%, 10%, 50%)	●
79	구급의약품	의약품	생리식염수 (수액용 20ml, 500ml, 1000ml)	●

연번	용도 대분류	용도 중분류	장비명	구급차 필수 적재장비(●)
80	구급의약품	의약품	플라스마솔루션 또는 하트만용액(500ml, 1000ml)	●
81	구급의약품	의약품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
82	구급의약품	의약품	항히스타민제(항알러지용)	●
83	구급의약품	의약품	에피네프린(부신흔호르몬제)	●
84	구급의약품	의약품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
85	구급의약품	의약품	기관지확장제(의료용분무기용)	●
86	구급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냉온장고	-
87	구급의약품	소독제	포비돈(살균용)	●
88	구급의약품	소독제	클로로헥시딘(살균용)	-
89	구급의약품	소독제	에탄올(살균용)	●
90	구급의약품	소독제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
91	구급의약품	소독제	증류수(멸균)	-
92	감염방지	감염방지	폐기물보관통	●
93	감염방지	감염방지	주사바늘폐기용기	●
94	감염방지	감염방지	구토용백	●
95	감염방지	감염방지	감염보호복세트(보호복, 덧신, 마스크, 안경, 장갑)	●
96	감염방지	감염방지	일회용 덴탈마스크	●
97	감염방지	감염방지	N95마스크	●
98	감염방지	감염방지	오염방지 1회용 가운	●
99	감염방지	감염방지	감염방지1회용기도관리세트 (1회용BVM,extensiontube,후두경,OPA,고정밴드)	-
100	감염방지	장비소독	소독기(차량용, 헬기용, 선박용)	-
101	감염방지	장비소독	과산화수소	●
102	감염방지	장비소독	차아염소산나트륨	-
103	감염방지	장비소독	플라즈마 멸균기	-
104	감염방지	장비소독	자외선살균소독기	-
105	감염방지	장비소독	헬멧소독기	-
106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구급일지단말기	●
107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휴대용전화기	●

연번	용도 대분류	용도 중분류	장비명	구급차 필수 적재장비(●)
108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블루투스 이어폰	●
109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이동국(차량용) / 휴대국(개인용)	●
110	통신기록장비	통신장비	이동식 전원공급장치(AC)	-
111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내부용)	●
112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외부용)	●
113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구급차운행기록장치	●
114	통신기록장비	기록장비	웨어러블 카메라	●
115	재난대응	환자분류	응급환자 분류표	-
116	재난대응	환자처치	다수사상자 현장대응키트(중증도 분류 및 표식용품, 응의료소 조끼, 재난의료가방 등)	-
117	재난대응	환자처치	음압형 환자이송장비	-
118	재난대응	환자처치	사체낭	-
119	개인안전	대원보호	구급헬멧	-
120	개인안전	대원보호	보호안경	-
121	개인안전	대원보호	안전장갑	-
122	개인안전	대원보호	허리보호대	-
123	개인안전	대원보호	아이젠	-
124	개인안전	대원보호	손전등 또는 헤드랜턴	-
125	개인안전	대원보호	다기능 조끼(방검성능 포함)	-
126	개인안전	대원보호	구급화	-
127	개인안전	대원보호	개인선량계(방사능 측정)	-
128	개인안전	대원보호	무릎보호대	-
129	개인안전	대원보호	호신기	-
130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화학보호복 C급	-
131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화생방마스크	-
132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제독제	-
133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내화학 장화	-
134	개인안전	유해화학보호	내화학 장갑	-
135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기도삽관평가용 마네킨	-

연번	용도 대분류	용도 중분류	장비명	구급차 필수 적재장비(●)
136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혈압맥박평가용 마네킨	-
137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CPR 성인기본 마네킨	-
138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고급형 연습용 심장충격기	-
139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전문실습 마네킨	-
140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정맥주사 마네킨	-
141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성인기도확보 마네킨	-
142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소아기도확보 마네킨	-
143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영아기도확보 마네킨	-
144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상처표시 마네킨	-
145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분만 마네킨	-
146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재난대응 응급의료소 운영 도상훈련 키트	-
147	교육실습	교육실습(구급대원용)	견인부목 마네킨	-

[별표 기]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5조, 제18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호흡보호장비의 안전관리 및 그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호흡보호장비"란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등지계, 용기, 면체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 잠수장비(부력조절기, 용기, 호흡조절기 등 구성품을 포함한다)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호흡용 압축공기를 제조하거나 저장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 나. "고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고압용기 중 공기호흡기 용기와 잠수장비 용기를 말한다.
 - 다. "충전실"이란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 라. "정비실"이란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정비·세척 및 충전 등을 위한 시설과 부대설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 마. "호흡용 공기"란 공기충전기로 고압용기에 충전하여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사용하는 공기를 말한다.
 - 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으로 한다.
4. (공기품질 기준) 호흡용 공기의 품질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의 성분 기준을 따른다.
5. (공기 품질 검사)
 -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공기품

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기 품질 검사를 위한 공기 시료는 공기충전기의 필터를 교체하기 직전에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다.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는 공기충전기를 충분히 작동시켜 공기충전기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 제조된 공기를 공기충전기와 고압용기의 연결부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라. 공기 품질 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방관서명 및 부서명
- 2) 검사용 공기시료를 채취한 일시, 장소
- 3) 필터 교체 후 누적 작동시간
- 4) 오일 및 필터의 종류
- 5) 고온경보, 오일압력 저압경고 기능 유무

마. 소방기관의 장은 "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제8호에 따라 고압용기의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냄새가 감지된 경우에는 해당 고압용기에 호흡용 공기를 충전한 공기충전기에 대하여 공기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소방기관의 장은 "가" 및 "마"에 따른 공기품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 (검사결과 관리)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 기준 제4호에 따른 공기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기충전기의 사용을 즉시 금지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수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기품질 검사의 신청 및 결과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가.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호흡보호장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공기충전기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되,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제조사 권장기준을 따를 수 있다.
 - 2) 공기충전기는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 내부는 항시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 3) 공기충전기의 필터는 연 2회 이상 교체한다.
 - 4)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 5) 고압용기의 표면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제조사, 전문기관 또는 자격소지자 등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6) 고압용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압력 이상으로 유지한다.
 - 가) 공기호흡기 용기 : 25MPa
 - 나) 잠수장비 용기 : 18MPa
 - 7) 호흡보호장비를 세척·충전·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
- 나.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8. (정기검사 등)
- 가. 고압용기는 제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제6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기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기충전기로 호흡용 공기를 충전한 고압용기에 대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위생검사는 정비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제조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고압용기의 내부는 조명기구와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부식, 이물질, 수분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 2) 고압용기의 외부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깊이게이지를 이용하여 손상의 깊이를 측정한다.
 - 3) 고압용기의 내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세척한다. 다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가) 수분, 분진은 압력펌프로 물을 분사하여 세척 후 건조시킨다.
 - 나) 오일은 전용세척제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형궤으로 닦아내거나 텀블링 처리(연마 재료를 용기 안에 넣고 회전시켜 표면을 세척하는 작업)를 하고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어 낸 후 건조시킨다.
 - 다) 냄새, 곰팡이, 오염물 등은 전용세척제를 용기 내부에 채워 5분간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구어 낸 후 건조시킨다.
 - 라) 용기 내부의 건조는 섭씨 45도 이하의 건조한 바람을 강제 송풍시켜 건조시킨다.
 - 마) 부식이 심하여 물로 오염물을 세척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텀블링 처리를 하거나 외부 전문 업체에 세척을 의뢰한다.
 - 4) 고압용기의 외부가 오염된 경우에는 전용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화학세제, 페인트제거제 및 용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5) 고압용기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압용기와 밸브를 분리할 때마다 고무패킹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 6) 고압용기의 밸브를 결합할 때에는 95~105Nm의 회전력을 유지하되, 제조사가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라. 공기호흡기 면체와 보조마스크가 오염된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세척한다.
- 마. 공기호흡기 면체의 기밀성 시험은 면체를 직접 착용한 상태에서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기밀이 불량한 경우에는 면체 검사기를 이용하여 재시험 한다.

바. 잠수장비는 매 3년 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한다.

9. (용기 등의 파기)

가.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고압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즉시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불용된 고압용기와 공기충전기가 민간에 재사용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고압용기 및 공기충전기를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1) 고압용기의 파기는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파기한다.
- 2) 고압용기는 공기 압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몸통부위와 밸브 결합부위를 절반 이상으로 압착하거나 절단하여야 한다.
- 3) 공기충전기는 압축기, 고압배관 등 주요 장치를 망치 등으로 타격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호 이외에 세부적인 파기 방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23의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을 따른다.

10. (충전실의 설치)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충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의 시설 등과 별도로 구획된 구조이어야 한다.
- 2) 공기 충전작업을 할 때에 실내온도가 섭씨 5도 이상 45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제조사가 권장하는 환기시스템을 갖추거나 실내공기가 신속하게 배기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설비는 공기충전기의 전동기와 각종 설비 등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충전실 설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충전실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 (정비실의 설치)

가. 소방본부장은 호흡보호장비의 검사·세척·충전 및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면체 검사실은 분해조립 검사대, 면체 밀착도 검사설비, 정비기록대, 기록용 컴퓨터 및 바코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용기 검사실은 밸브 분해 및 조립장치와 공기호흡기 용기 내부의 오염 또는 부식 상태 등을 정확하게 관찰, 저장할 수 있는 내시경카메라를 갖추어야 한다.

3) 용기 세척실은 온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세척설비 및 건조설비 등은 내식성 재료로 한다.

4) 예비용기 보관실은 충전이 완료된 용기와 충전이 필요한 용기가 구분되도록 식별표지가 부착된 보관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나. 소방본부장은 지역 특성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설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소방본부장은 정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2. (충전실 및 정비실 관리)

- 가.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 및 정비실(이하 "정비실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설비 및 장비에 대하여 각각의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정비실 등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되, 측정장비는 검정·교정 등 안내서에 제시된 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정비실 등에는 공기호흡기 세트 10개와 용기 50개 이상을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실의 경우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에 배치할 수 있다.

13. (예비용품 관리)

- 가.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10세트 이상, 공기호흡기 용기 10개 이상의 예비용품을 확보하여 정비실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의 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자의 자격) "이 기준 제10호의 다" 및 "제11호의 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소방기관의 현업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5. (안전관리자 양성)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별표 7의 서식 제1호]

공기충전기 점검대장

(앞쪽)

운용기관명					설치일자	20 . . .		
□ 관리항목								
모델번호					구입가격			
제작사				A/S 담당자	직·성명(전화)			
형식 및 주요제원	크기(mm)	가로×세로×높이			중량(kg)			
	압축기 압력 (MPa)	1단			3단			
		2단			4단			
	최고충전압력	MPa			고온경보	(유, 무)		
	모터	전압/출력		/	사용온도조건	~		
	오일	종류/교체주기		/	오일압력 저압경고기능	(유, 무)		
	흡입정화필터	종류/교체주기		/	설치장소			
토출정화필터	종류/교체주기			누적시간				
□ 안전관리자 현황								
관리기간	계급	성명	지정자	관리기간	계급	성명	지정자	
□ 공기품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 정비사항								
일 자	정 비 내 용				정비업체(연락처)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뒷쪽)

세부항목별 점검사항 기록란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일자별 점검결과						
크랭크	오일량							
	오일 누유 유무							
	이상 소음 유무							
모터	벨트 장력 적정성							
	전선 접속상태							
	이상 소음 유무							
압축기	압축기 기밀상태							
	고압배관 연결상태							
	이상 소음 유무							
센서작동	수분센서 작동상태							
	온도감지 센서 작동상태							
고압호스 연결부	고압밸브 기밀상태							
	호스결합부 누기 및 균열							
밸브	드레인밸브	자동						
		수동						
압력계	압력계 파손 유무							
	압축단계별 압력상태							
흡입필터 및 호스	흡입필터 오염상태							
	흡입호스 연결상태							
외관	청소상태							
	부식, 오염상태 등							
사용시간	당 일							
	누 계							
공기성분	산소(Vol%)							
	이산화탄소(ppm이하)							
	일산화탄소(ppm이하)							
	수분(mg/m³이하)							
	오일(mg/m³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μg/m³)							
	총탄화수소(ppm)							
	냄새							
확인	소방장비 운전자 (안전관리자)							
	확인자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표 7의 서식 제2호]

호흡보호장비 점검일지

소속	운용기관
----	------

□ 점검결과

[illegible]

□ 결과조치

날 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장비관리공무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되, 사용 시 안전여부 및 장비의 수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위주로 장비사용 설명서를 대조하면서 점검한다.

※ 표기범례 : ○ 적합, △ 수리필요, ⊕ 수리완료, × 교환필요, ⊗ 교환완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표 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 기준(제18조 관련)

1. (위원의 구성) 불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소방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불용처분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심의업무를 관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4. (심의회 보조 및 기록) 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아래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심의회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6. (심의회회의 업무)

가. 위원장은 소방장비의 연장사용 및 불용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소집한다.

나. 위원장은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불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부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위원장은 불용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물품관리부서,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라. 불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용연수의 경과, 파손 또는 훼손,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방장비에 대한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
- 2) 재사용, 연장사용, 불용의 결정을 위한 오염 제거 등 세척 또는 정비이력, 장비의 상태, 부품의 수급 여부, 운용현황 등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검토
- 3)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소방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에 따른 수리(수선) 후 재사용 가능 여부
- 4) 소방장비의 불용에 따른 대체 소방장비의 보유 여부, 불용품 분류의 적정성 검토
- 5) 불용 소방장비의 재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검토 및 폐기 방법의 결정
- 6) 그 밖의 소방장비의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의 제척·회피)

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나. 위원이 "가"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위원의 임명·위촉 해제) 소방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된 경우
 - 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위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 가.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나. 위원장은 심의안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비밀보호의 의무)
 - 가. 위원은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 나. 심의회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참석위원은 회의 전에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불용·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불용품 분류) 불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가. 관심장비: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 나. 주의장비: "가"에 해당되는 소방장비 중 안전성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 다. 심각장비 : "가" 및 "나"의 장비 중에서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장비

[별표 8의 서식 제1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

[illegible]

[별표 8의 서식 제2호]

의 결 서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 등 명				
심의안건					
심의방법					
의결내용					
참석위원	소속	직위·계급	성명	서명	비고

[별표 8의 서식 제3호]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위원장(반장) 등 명
회의안건	
회의방법	
회의내용(간략히 기록)	

[별표 8의 서식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위원(반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비 불용심의회」의 심의(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방본부(서장)장 귀하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펌프탑재 소방자동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펌프차】

소속	차량번호
소방장비운용자	
소방장비 관리자	
이전 근무자	당번 근무자

□ 점검결과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교대 점검	외관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누수· 누기	오일 및 냉각수	바닥 누유·누수 흔적	유(이)무(이)X	
		압축공기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kg/cm ²	
	시동	시동	시동	개(이)부(이)X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이)무(이)X	
		주차 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이)무(이)X	
	통신	무전기	교신상태	개(이)부(이)X	
		블랙박스·후방입체시계장치	작동상태	개(이)부(이)X	
		영상전송장치	작동상태	개(이)부(이)X	
	물 폼탱크	수량계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ℓ	
		액량계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ℓ	
일일 점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변형 및 마모상태	유(이)무(이)X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이)부(이)X	
	배터리	배선체결	단자·배선 체결	적(이)부(이)X	
	장치성능	경광등·등화장치	손상·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제어성	적(이)부(이)X	
	펌프성능	펌프 동력인출장치	작동상태	개(이)부(이)X	
		주펌프	방수압력 0.7Mpa에서 엔진 회전수 원위치 후 1분 뒤 압력감소 확인(0.1Mpa 미만)	Mpa	
	배관	배관	누수(기밀성)	유(이)무(이)X	
		배수밸브	동력인출장치 해제 시 자동 개방 또는 수동개방 가능 여부	개(이)부(이)X	
		방수구	조작손잡이 개폐	개(이)부(이)X	
	에어	에어밸브	작동상태	개(이)부(이)X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구조공작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소속	차량번호
소방장비운용자	이전 근무자 당번 근무자
소방장비 관리자	

□ 점검결과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교대 점검	외관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누수· 누기	오일 및 냉각수	바닥 누유·누수 흔적	유[이무]X	
		압축공기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kg/cm ²	
	시동	시동	시동	개[이부]X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이무]X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이무]X	
	통신	무전기	교신상태	개[이부]X	
		블랙박스·후방 입체시계장치	작동상태	개[이부]X	
		영상전송장치	작동상태	개[이부]X	
일일 점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변형 및 마모상태	유[이무]X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이부]X	
	배터리	배선체결	단자·배선 체결	적[이부]X	
	장치성능	경광등·등화장치	손상·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제어성	적[이부]X	
	특장	조명탑	작동상태	개[이부]X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일일 측정값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10% 이상 벗어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한 점검 필요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구급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소속	차량번호
소방장비운용자	이전 근무자
소방장비 관리자	당번 근무자

□ 점검결과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교대 점검	외관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누수 누기	오일 및 냉각수	바닥 누유·누수 흔적	유[이무]X	
	시동	시동	시동	개[이부]X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이무]X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이무]X	
	통신	무전기	교신상태	개[이부]X	
		블랙박스·후방 입체시계장치	작동상태	개[이부]X	
		영상전송장치	작동상태	개[이부]X	
일일 점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변형 및 마모상태	유[이무]X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이부]X	
	배터리	배선체결	단자·배선 체결	적[이부]X	
	장치성능	경광등·등화장치	손상·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제어성	적[이부]X	
		인버터	작동상태	개[이부]X	
	특장	상부 조명등	작동상태	개[이부]X	
		발판	훼손 및 작동상태	개[이부]X	
		오존소독기	작동상태	개[이부]X	
		환풍기	작동상태	개[이부]X	
		장비별 특성에 따라 추가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일일 측정값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10% 이상 벗어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한 점검 필요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신 설〉

화재진압장비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소속	차량번호
소방장비운용자	이전 근무자
	당번 근무자
소방장비 관리자	

□ 점검결과

점검구분	장 비 명	점검내용	점검결과	
교대 점검	소방호스	파손 여부	유[이]무[X]	
	관창	외관, 파손 여부	유[이]무[X]	
	결합금속구	외관, 파손 여부	유[이]무[X]	
	소화기	파손 여부	유[이]무[X]	
일일 점검	동력절단기	작동상태	개[이]부[X]	
	체인톱	작동상태	개[이]부[X]	
	동력소방펌프	작동상태	개[이]부[X]	
	중량물 유압장비	작동상태	개[이]부[X]	
	이동식송배풍기	작동상태	개[이]부[X]	
	문개방기구	작동상태	개[이]부[X]	
	발전기	작동상태	개[이]부[X]	
	라이트라인	작동상태	개[이]부[X]	
	전선릴	작동상태	개[이]부[X]	
	열화상 카메라	작동상태	개[이]부[X]	
	공기주입형 인명구조매트	보관상태 (작동상태는 주간점검)	개[이]부[X]	

※ 상기 점검항목 외의 적재장비도 외관점검 등 일상점검 수준의 점검 실시
※ 결함·고장 발생 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점검일지를 기록하고 결재 상신
※ 점검사항: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피로한도 초과 및 부식 등 소
방활동 및 대원 안전 여부와, 장비 수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장비사용 설명서를 참
고하여 점검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6호서식] <신 설>

펌프탑재 소방자동차 주간 점검일지【펌프차】

(양쪽)

소속	차량번호
----	------

소방장비운용자 이전 근무자
 당번 근무자

소방장비 관리자

□ 점검결과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교대 점검	외관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누수 누기	오일 및 냉각수	바닥 누유·누수 흔적	유[이무]X	
		압축공기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kg/cm ²	
	시동	시동	시동	개[이부]X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이무]X	
		주차 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이무]X	
	장치성능	경광등·등화장치	손상·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제어성	적[이부]X	
	통신	무전기	교신상태	개[이부]X	
		블랙박스·후방 입체시계장치	작동상태	개[이부]X	
		영상전송장치	작동상태	개[이부]X	
	물·폼탱크	수량계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ℓ	
		액량계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ℓ	
시동전	장치성능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개[이부]X	
	승차실(캡)	승차실(캡) 탈팅	상승	개[이부]X	
	기타	유리세정액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 ~ 최고)	적[이부]X	
		냉각수		적[이부]X	
		조향장치 오일		적[이부]X	
		그리스 자동주입기		적[이부]X	
		냉각팬 벨트	벨트상태, 벨트장력 등	적[이부]X	
	윤활장치	동력추진축 (펌프 구동축 포함)	주입·도포	적[이부]X	
		타이 로드 엔드	볼트 체결상태 등	적[이부]X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시동전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 ~ 최고)	적(이)부(지)	
		제동장치오일		적(이)부(지)	
		증속 기어·소방펌프·진공펌프		적(이)부(지)	
		자동변속기 오일		적(이)부(지)	
구동중	승차실(캡)	승차실(캡 탈팅)	하강	개(이)부(지)	
	펌프장치	동력인출장치	작동상태	개(이)부(지)	
		진공펌프	진공펌프 30초 동작 (660mmHg 이상 도달여부)	개(이)부(지)	
			펌프 정지 10초 후 누기 여부	유(이)무(지)	
			진공작동중 방수구 흡입감촉	유(이)무(지)	
		차체분무장치	작동 불능 노출	개	
	전기장치	조명탑	작동상태	개(이)부(지)	
		인버터	작동상태	개(이)부(지)	
정지	화학	소화약제 [약제별 중량(충전기준에 따름)]	폼액	ℓ	
			분말	kg	
			분말 가압원	적(이)부(지)	
			이산화탄소	kg	
			할로겐	kg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일일 측정값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10% 이상 벗어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한 점검 필요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3호서식] <신 설>

구조공작차 주간 점검일지

(앞쪽)

소속	차량번호
소방장비운용자	이전 근무자 당번 근무자
소방장비 관리자	

□ 점검결과

점검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교대 점검	외관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누수·누기	오일 및 냉각수	바닥 누유·누수 흔적	유/이/무/기	
		압축공기	공기압력측정계 압력	kg/cm ²	
	시동	시동	시동	개/이/부/기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이/무/기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이/무/기	
	통신	무전기	교신상태	개/이/부/기	
		블랙박스·후방 입체시계장치	작동상태	개/이/부/기	
		영상전송장치	작동상태	개/이/부/기	
시동전	장치성능	외부 전원공급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개/이/부/기	
	기타	유리세정액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 ~ 최고)	척/이/부/기	
	승차실(캡)	승차실(캡 탈팅)	상승	개/이/부/기	
	기타	냉각수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 ~ 최고)	척/이/부/기	
		조향장치 오일		척/이/부/기	
		그리스 자동주입기		척/이/부/기	
		냉각팬 벨트	벨트상태, 벨트장력 등	척/이/부/기	
	유회장치	동력추진축 (펌프 구동축 포함)	주입·도포	척/이/부/기	
		타이 로드 엔드	볼트 체결상태 등	척/이/부/기	
	오일	엔진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 ~ 최고)	척/이/부/기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척/이/부/기	
	승차실(캡)	승차실(캡 탈팅)	하강	개/이/부/기	

210mm x 297mm [(백상지(80g/㎡))]

(뒤쪽)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구동중	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이]무[X]	
	전기장치	경광등·등화장치	손상·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사이렌	음량 크기·제어성	적[이]부[X]	
		조명탑	작동상태	개[이]부[X]	
		인버터	작동상태	개[이]부[X]	
기타	크레인	불, 아우트리거	작동상태	개[이]부[X]	
		유압발전기	작동상태	개[이]부[X]	
		유압오일 게이지	오일량	적[이]부[X]	
	권양장치	와이어, 이음	와이어 훼손 및 이음상태	유[이]무[X]	
		권양기	작동상태	개[이]부[X]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일일 측정값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10% 이상 벗어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한 점검 필요

210mm×297mm[(백상지(80g/㎡)]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6호서식] <신 설>

구급차 주간 점검일지

소속	차량번호
소방장비운용자	이전 근무자 당번 근무자
소방장비 관리자	

☐ 점검결과

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교대 점검	외관	상징물·표식 등 부착물	부착물 탈락·훼손 수	개	
		차량의 변형·파손	변형 및 파손부위 수	개	
	누유·누수 누기	오일 및 냉각수	바닥 누유·누수 흔적	유[이]무[이]	
	시동	시동	시동	개[이]부[이]	
		계기판	시동 후 점등된 경고등 수 (주차, 안전벨트 제외)	개	
	제동장치	제동장치	정지 시 밀림	유[이]무[이]	
		주차제동장치	경사지 또는 출발 시 밀림	유[이]무[이]	
	통신	무전기	교신상태	개[이]부[이]	
		블랙박스·후방·입체시계장치	작동상태	개[이]부[이]	
		영상전송장치	작동상태	개[이]부[이]	
주간 점검	타이어	타이어 상태	타이어 변형 및 마모상태	유[이]무[이]	
			공기압력 및 휠너트 체결상태	적[이]부[이]	
	오일	엔진, 제동 조향장치 오일	측정눈금에 의한 오일량 (최저 ~ 최고)	적[이]부[이]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 ~ 최고)	적[이]부[이]	
			측정눈금에 의한 수량 (최저 ~ 최고)	적[이]부[이]	
	기타	유리세정액	벨트상태 등	적[이]부[이]	
		냉각수	손상·미점등 장치 수 (경광등, 조명등 전체)	개	
		냉각팬 벨트	음량 크기·제어성	적[이]부[이]	
	장치성능	경광등·등화장치	전원공급 및 자동이탈 여부	개[이]부[이]	
		사이렌	작동상태	개[이]부[이]	
		외부 전원공급장치	작동상태	개[이]부[이]	
	전기장치	상부 조명등	작동상태	개[이]부[이]	
		인버터	작동상태	개[이]부[이]	
특장		발판	훼손 및 작동상태	개[이]부[이]	
		오존소독기	작동상태	개[이]부[이]	
		환풍기	작동상태	개[이]부[이]	

☐ 결과조치

날짜	부적합 사항		조치사항	소방장비 관리자
	항목	내용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일일 측정값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10% 이상 벗어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한 점검 필요

210mm×297mm[(백상지)(80g/㎡)]

본 교재에 수록하지 않은 별지서식과 부록은 다음과 같다.

※ 소방장비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식과 매뉴얼임으로 열람을 요함

- [별지 1] 펌프탑재 소방자동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펌프차】
- [별지 2] 펌프탑재 소방자동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소방물탱크차】
- [별지 3] 펌프탑재 소방자동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소방화학차】
- [별지 4] 지휘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5] 지휘버스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6] 화재조사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7] 조명·배연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8] 구조공작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9] 구조버스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10] 생활안전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11] 구급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12] 산불진화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13] 소방고가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사다리차】
- [별지 14] 소방고가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굴절차】
- [별지 15] 소형사다리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사다리식】
- [별지 16] 소형사다리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굴절식】
- [별지 17] 무인 파괴방수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18] 이동안전체험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19] 행정차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20] 기타 차량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21] 화재진압장비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22] 구조장비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23] 구급장비 교대 및 일일 점검일지
- [별지 24]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일지
- [별지 25] 감염관리실 점검일지

- [별지 26] 펌프탐재 소방자동차 주간 점검일지【펌프차】
- [별지 27] 펌프탐재 소방자동차 주간 점검일지【소방물탱크차】
- [별지 28] 펌프탐재 소방자동차 주간 점검일지【소방화학차】
- [별지 29] 지휘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0] 지휘버스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1] 화재조사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2] 조명·배연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3] 구조공작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4] 구조버스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5] 생활안전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6] 구급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7] 산불진화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38] 소방고가차 주간 점검일지【고가차】
- [별지 39] 소방고가차 주간 점검일지【굴절차】
- [별지 40] 소형사다리차 주간 점검일지【사다리식】
- [별지 41] 소형사다리차 주간 점검일지【굴절식】
- [별지 42] 무인 파괴방수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43] 이동안전체험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44] 행정차 주간 점검일지
- [별지 45] 기타 차량 주간 점검일지
- [별지 46] 개인보호장비 점검부
- [별지 47] 소방장비 관리자용 점검항목 확인대장
- [별지 48]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 [별지 49]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 [부록 1] 개인보호장비 관리 매뉴얼
- [부록 2] 소방자동차 관리 매뉴얼
- [부록 3]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

2

PART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장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

제2장 총칙

제3장 소방시설업

제4장 소방시설공사

제5장 소방기술자

제6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9장 부칙

제1장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



학습 목표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을 파악함.
2.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 목적과 개정과정을 이해함.
3.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구성을 파악함.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기존의 소방법을 분법¹⁾하면서 소방법 제6장(소방시설공사업 등) 및 제6장의2(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과 관련한 안전성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제법인데 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사업법으로서 각종 소방시설업을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방안전을 담보하는 법률이다.

소방산업 분야는 시장경제원칙에 의하여 시장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의 보전이라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한 수준이 뒷받침 되는 안전의 항상성을 담보하기 위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산업을 육성 또는 조성하여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방기본법에서는 조직과 장비 및 기본적인 소방활동에 대하여 규율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²⁾」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대상물 또는 관계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의 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소방기본법 제정배경 참조

2) 2022. 12.1 분법시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소방시설의 적정, 적법한 시공을 담보한다는 점에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안전을 위하여 각종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등에 있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미리 예방하고 소방산업의 발전과 기술진흥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등을 전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업무규제 및 자격규제법률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배경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 활동에 관한사항, 공사업 등 소방 관련업에 관한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방, 소방시설 및 위험물관련 사항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였다.

기존의 소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 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 이후 26차례나 개정되면서 시대적 상황 대응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 체계상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 하고, 분법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사업에 대한 규제인 사업법으로서 기존의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의 표준화, 소방산업기술의 건전한 육성과 소방기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의 안전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화재로부터의 안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사업법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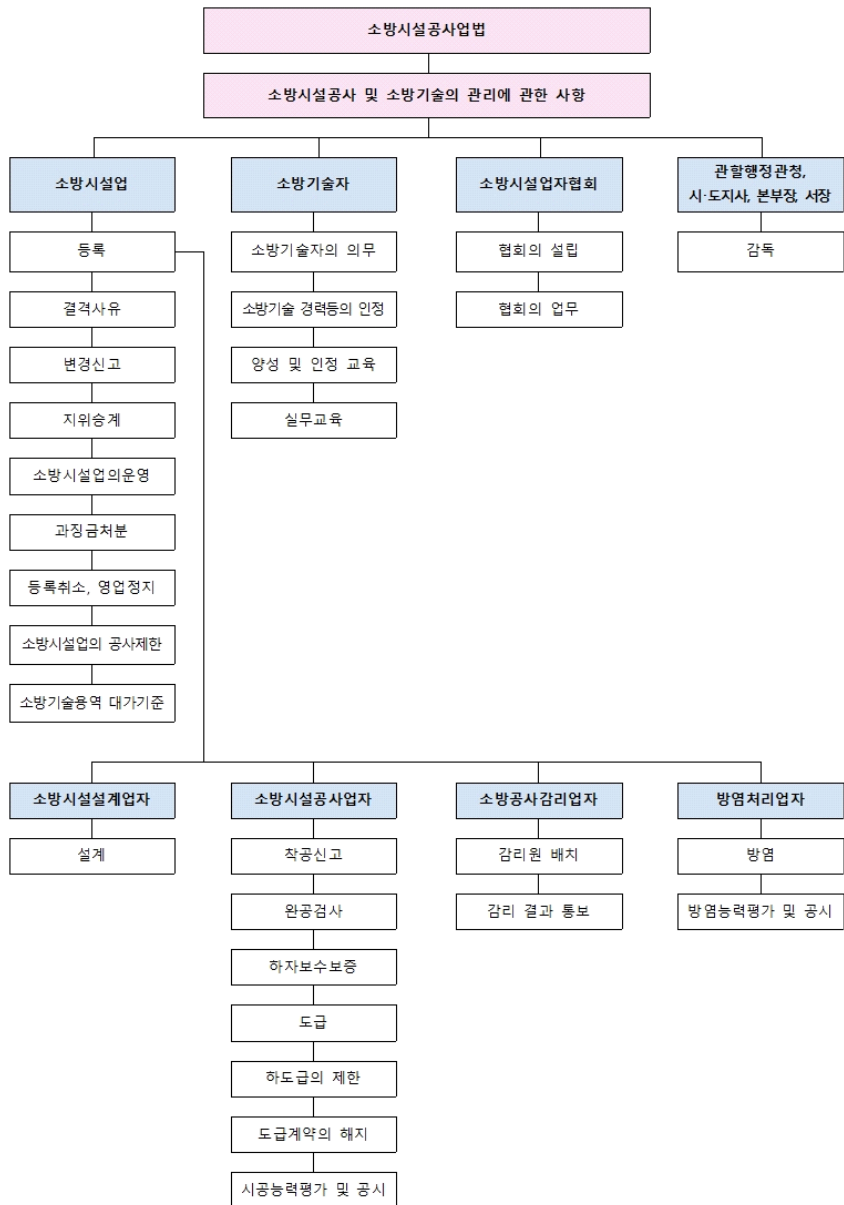
- 가.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사람의 경우에만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방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적정·적법이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법 제4조)
- 나. 법령위반 등으로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법 제10조).
- 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대상물은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위주설계”)하여야 한다(법 제11조)
- 라.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6조).
- 마.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도급(都給)하도록 하였다(법 제21조).

제3절 소방시설공사사업법의 구성

법률의 일반적인 구성이 제명과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칙은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되어 있듯이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또한 전체적으로 제명, 본칙 전문 제7장 제4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칙은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부분과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등, 소방기술자를 규율하고 있는 실체규정과 감독,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수수료 등 법률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칙 규정과 이하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규정체계



[그림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체계도

제2장 총 칙



학습 목표

1. 소방시설업법의 총칙을 이해함.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제시하는 용어정의를 이해함.

총칙규정은 법률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법률 전체에 공통된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총칙에서는 본 법률의 입법 목적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목적, 법률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정의, 소방청장, 발주자, 소방시설업자에게 소방시설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있는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및 이 법과 다른 법률(소방관련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3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 의

목적규정이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이것은 제명(題名)³⁾과 함께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3) 법률의 제목인 법률명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말함

이런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정의규정과 함께 법률규정의 의미를 당해 법률 또는 다른 법률 중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규적 해석의 기능을 지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의 목적 규정은 기타 사업법의 목적⁴⁾규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어 사업법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2. 목적과 수단

소방시설공사사업법은 소방시설업의 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이라는 1차적인 목적과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3. 기능

일반적인 모든 법률에서와 같이 제1조 목적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은

첫째: 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며 이하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의 지침이 된다.

목적규정은 이하 이 법의 모든 조항이 존재하는 실익이 본 조의 목적 때문에 있는 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이하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본 조의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하여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둘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성격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 및 그에 따른 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규정 내용을 보면 여타의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어 사업법의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4)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과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임을 표현하고 있어 두 법은 각각의 개별법 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방업무인 화재로부터의 안전 확보라는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때 선택한 두 법률의 수단은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에서 분법 되었음을 비추어 보아도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소방업무의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제2절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 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 (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 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 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의

정의는 법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가 다의적이거나 해석상의 논란 또는 국민에게 생소한 용어일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법 예측가능성 확보와 법률해석상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본 규정은 해석상 논란예방, 법 집행과정의 일관성의 확보 및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어려운 용어를 미리 설명하고 풀이함으로써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정의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입법기술상의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행정관련 법률에서는 실체규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칙규정에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이하 법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이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설계도서를 설계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하는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방염처리업을 말한다.

나. 소방기술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한 사람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 3)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3. 소방관련법의 용어의 준용

법률이 용어를 정의할 때 이 법에서 주로 사용되고 또한 이 법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정의를 하여두고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 이 법과 관련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은 관련법 정의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중복규정을 피하고 법률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입법 기술적인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에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소방청장, 발주자, 소방시설업자 모두에게 소방시설공사등 관련에 대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기준 마련 그리고 소방시설의 공공 안전 및 복리에 적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선정, 법령 근거에 의한 설계도서 및 도급계약 등의 내용에 의거 소방시설공사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1. 의의

본 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소방관련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등 여러 법률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련 법률⁵⁾과는 상호 연관이 깊다.

본 조는 이 법과 관련된 사항이나, 미처 규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 법과 관련된 사항이 소방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소방관련 법률과 상호보완적이고 보충적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방안전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장 소방시설업



학습 목표

1. 소방시설업을 이해함.
2. 소방시설업 등록과 과징금 등을 이해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등의 의무와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규정들은 소방대상물 또는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 법률⁶⁾인 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사업법으로서 각종 소방안전의 기초가 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이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적정, 적법,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이 확보된 소방시설설치를 담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방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있어서 소방시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소방시설업자만이 소방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첫째: 설계·시공·감리의 단계부터 미리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적정 설계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상의 장애 유발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둘째: 소방시설의 공사는 그 특성상 한번 시공되면 다시 재시공 또는 수리 및 보수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바 설계- 시공- 감리- 완공의 일련의 사업을 이행하는 업종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적정공사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셋째: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고

6)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넷째: 궁극적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확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방시설업에 대한 법의 규정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서의 합헌적인 제한의 정당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5조]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1. 의 의

소방시설업에 의하여 설계·시공되는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시설인 관계로 인하여 소방시설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인적, 물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적정·적법 소방시설을

확보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와 소방산업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에 있어서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감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업의 영업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단서로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자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를 외부 민간업자에게 발주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공공주택의 건설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예산절약 그리고 타 법령과의 불균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법집행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방시설 설계업

가. 의의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 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업자가 설계하여야 할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시행령 별표 1)

업종별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비고〉

-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기계분야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 전기분야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소방시설 공사업

가. 의의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를 업으로 하는 소방시설업을 말한다.

소방시설은 건물의 공사 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한번 공사하면 재공사나 보수 등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대상이 달라지고 나아가

소방설비공사를 수행해나갈 기술상·자본상·경험상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소방시설 공사업의 시공능력 공시 등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또한 알림으로써 실제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만을 수주하게 됨으로서 철저·완벽한 소방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분야와 영업범위 및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기 계 분 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 기 분 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비고〉

-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

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교란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할 수 있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교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8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개설로 보지 아니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소방용품을 보수하거나, 소방용품을 단독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공사 감리업

가. 의의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나. 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시행령 별표 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기계 분야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일반 소방 공사 감리 업	전기 분야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업종별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비고〉

-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기계분야
 -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 전기분야: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방염처리업

가. 의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적법하게 방염처리하는 업을 말한다.

나. 방염처리업의 실험실·방염처리시설·시험기기 및 영업범위 (시행령 별표 1)

업종별	항목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섬유류 방염업	1개 이상 갖출 것		부표에 따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목재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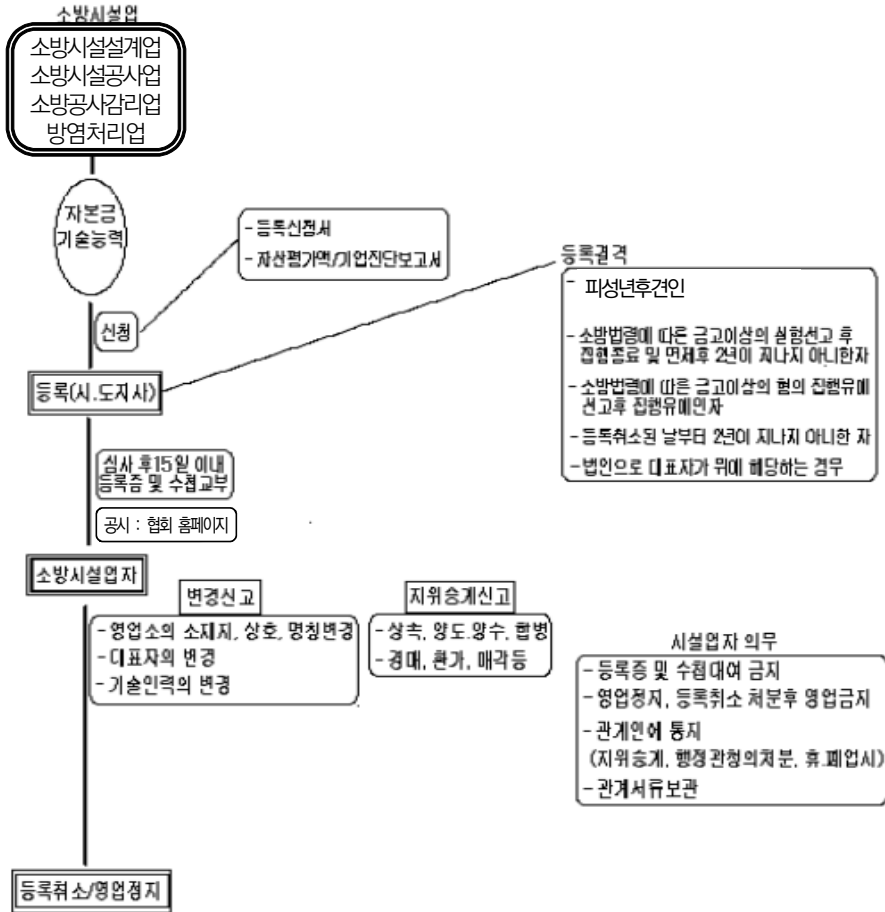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부표]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개정 및 시행일 2021. 1. 5.>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유류 방염업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추 것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추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산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유류 방염업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펫 직조설비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연소시험기 2. 향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성 수지류 방염업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추는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합판· 목재류 방염업	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추는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mmHg 이하) 및 가압설비(7kg/cm ² 이상)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 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추는 것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향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6. 소방시설업의 등록절차



[그림 2-2] 소방시설업 등록절차

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시행규칙 제2조)

- 1) 등록신청자 :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 2) 신청인 제출서류

가)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나) 국가기술자격증

다)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마)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1부.

3) 협회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된다)

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민원인 제출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나)~라)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행규칙 제3조)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하며, 협회는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미비 또는 서류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시행규칙 제4조)

1) 재발급

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분실·훼손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자는 아래의 반납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5.7.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 등을 얻는 데 있어서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공사사업법과 같은 사업법의 경우 자격부여와 특정영업에 관한 인·

허가를 할 때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둔다.

본 조가 이러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특정 신분 또는 자격 등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국민의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 기술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의 완벽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결격사유자에 대한 규제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소방시설업의 등록행위가 과도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이 법 또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전과사실이 있는 자를 소방시설업에 배제토록 하는 것은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다.

3)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배제는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의 성실한 법령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4) 대표자 및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대표자 및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대한 배제는 소방시설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적정·적법업무의 이행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제하고 있다.

8.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6조의2(휴업·폐업 신고 등)[제목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1. 6. 10.]

-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기 등록한 소방시설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이 법에서 정하는 등록 기준에 적합여부의 확인 외에도 관할 행정청의 감독권 행사 등을 위하여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변경신고 사항 (시행규칙 제5조)

-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 2) 대표자
- 3) 기술인력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시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 서류

가)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등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2) 기술인력 증빙서류

2) 협회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된다)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된다) 1부

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변경사항 처리

한국소방시설협회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하거나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경력수첩 포함)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시행규칙 제6조의2)

- 1) 소방시설업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다)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라) 영업소 소재지[본조신설 2016.8.25.]

마.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이후 재등록 승계

- 1)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 같은 업종을 다시 소방시설업의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2) 제3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승계가 된다.

9. 지위승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사실을 사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삭제<2020.6. 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사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은 학문상 일반적인 제한의 금지를 일정한 경우 해제하는 허가의 성격이 있다 할 것이며 허가는 성격 및 영업의 법적인 성질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 등 개인적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법⁷⁾의 경우에 공사 중에 공사업자의 지위변동으로 인한 공사의 혼란 및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위승계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 지위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본 조 또한 소방공사의 경우 공사 중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변동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지위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위승계의 시점은 사실상의 영업권을 승계한 시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영업권을 승계한 시점(등기부에 등재, 법률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등)을 말한다.

가.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자

-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나. 지위승계 절차 (시행규칙 제7조)

- 1)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또는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3)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7) 전기사업법 제1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등

(4)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5)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1부

나) 협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지위승계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지위승계의 확인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지위승계 서류를 제출 받은 협회는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0. 운 영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1. 6. 10.]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계, 시공, 감리 또는 방염처리를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법 제9조제8호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조제8호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 및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업에 대한 운영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업자 업무수행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운영 및 소방시설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에 대한 운영 및 업무 중 수행하여야 할 의무 등을 구체화하여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할 행정청의 소방시설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공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각종 관계서류를 보관토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 시 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의무규정과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적정공사 및 소방산업 발전이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소방시설업자의 의무

-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금지의무
- 2) 관계서류 보관의무: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 나)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기록부
 -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 3) 관계인에게 통지의무
 - 가) 지위승계를 한 때
 - 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다) 휴업 또는 폐업한 때

나.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으로 인한 계속공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이 있을 경우 소방시설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공사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방염처리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에 있는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 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시행일 “2024.1.4.]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2020. 6. 9.>]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여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행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재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가. 등록의 취소

일반적으로 행정관련 법상 대부분의 취소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로 한 행위 즉 허가·인가·등록·면허·인증 등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강학상의 철회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본 조에서도 등록의 취소는 학문상 철회에 해당한다.

시·도지사의 본 조에 의한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임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서와 같이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한 소방시설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한 번 더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시정명령 및 영업의 정지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보장 및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취소 처분 시에는 청문 등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처분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시정명령, 영업정지의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공정성을 한 번 더 확보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업이 이 법령 등의 위반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시정기간 및 영업정지 기간을 6월 이내로 하고 처분시 시·도지사의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 제10조에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다.

다. 시정명령·영업정지(제9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 내지 제26호)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4)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 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8)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 9)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1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4)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15)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8)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 19)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1)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22)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 2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 24)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5)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26)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 27)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8)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29)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라. 필요적 취소사유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7호)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마.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 별표 1)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제2호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횟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마.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바.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그 처분기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붙임1》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사.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어.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처. 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1)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5개월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커.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허.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고.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도.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로.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 통지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 6. 1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제2절 과징금

제10조(과징금처분)

-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 의 의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재금을 의미한다. 과징금은 본래 경제법상 의무위반자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 제재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하는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업을 정지 한다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나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 과하는 별이라 할 수 있다.

본 조 또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당해 업체의 존립이나 대외적인 신뢰도 저하문제, 소방시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발생 문제 등을 해소하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인 시·도지사가 구체적으로 행정법상 위반행위인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일정의 조건적 부담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위반행위·위반정도 및 과징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11조 과징금 징수절차)

《붙임2》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규칙 [별표2])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 마.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마목·거목·도목·로목 및 모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423

제4장 소방시설공사등



학습 목표

1. 소방시설공사등을 이해함.
2. 소방시설업의 개별 영업인 설계·시공·감리·방염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해함.

1.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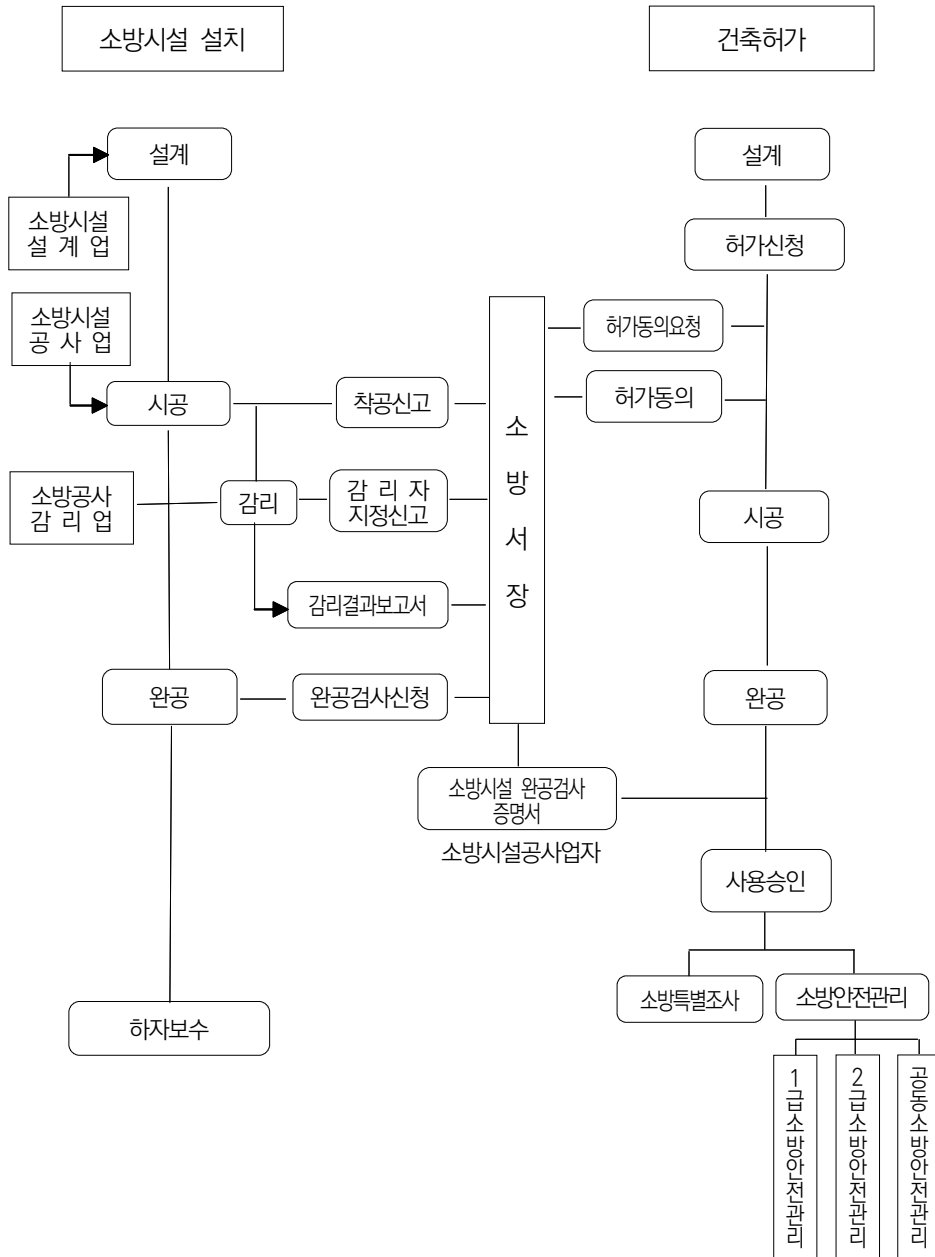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제2장에서 소방시설업의 전반적인 사항인 등록·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소방시설업의 개별 영업인 설계·시공·감리·방염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이 소방시설업과 관련한 총칙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본 장은 소방시설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어 소방시설업자의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담보하고 있다.

본 장은 전체적으로 4개의 절로 구분하고 있다. 제1절은 설계업자에 관한 사항, 제2절은 시공에 관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여 부실시공을 차단토록 하고 있으며 제3절에서는 감리업자 및 감리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방시설 공사의 적정·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4절에서는 소방시설업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각종 도급계약에 대한 절차적, 규제적 규정을 두어 명확하고 적정한 소방시설공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소방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이란 점에서 법률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하겠다.

2. 시설업 전반개념도



[그림 2-3] 소방시설업 개념도

가.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 11. 22>

제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소유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방시설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공사 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	해당 세부설비명		신고설비	완공 여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상설비				
	방염물품				
	실내장식물불연화				
「소방시설공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서장 직인					
※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1절 설계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 위반하여 설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2014.12.30>

1. 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업무준칙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설계업자가 설계를 할 때에는 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세부 법률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적법, 적정성을 담보 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의 단서 규정은 소방시설 설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설계기법 등의 도입 시 법령⁸⁾의 경직성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도입의 장애를 방지하고자 새로운 소방기술도입의 길을 열어주고 기술적인 문제 및 검증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기법의 도입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하여 인증되고 검증된 신뢰성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8) 화재안전기준 등

록 함으로써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이 가지고 있는 사양중심 규정(Pre- Prescription Fire Safety Design)으로 인한 규정의 경직성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조의 단서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성능위주 화재안전설계 근거마련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면적과 사양중심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소방시설의 설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대의 대규모 복합건축물에 맞는 화재안전설계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건축물이 고층화·지하화·복합화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소방시설의 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설계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능위주설계를 함으로써 화재발생시 불·연기·열의 확대 등의 화재성상과 재실자의 피난행동을 공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인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내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은 용산고속철도역사, 인천신공항, 상암 월드컵경기장, 아셈건물 등이 있다.

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
-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을 제외한다)
-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나.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의2])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절 시공

제1절에서는 설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본 절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각종 소방시설 등의 시공 시에도 소방기술자의 현장에 배치 책임시공,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뢰한 착공신고,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완공검사 및 일정기간 하자 보수에 보증 등 착공-시공-완공-하자보수까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과정별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이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안전시설인 관계로 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전반에 대하여 법령으로 수준화, 규정화, 의무화하고 있다.

1. 시공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설치기준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각종 소방법령에 일치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이는 소방시설공사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 필요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시공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사업자가 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비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의 공사
 -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라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사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나.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⁹⁾가 공사하는 경우
 -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책임시공의 확보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주어진 각종 법령상의 의무(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등)가 실제 시공 시에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와 소방시설공사의 명확성 및 시공과 관련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할 역량(육체적, 기술적 등)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비고 4호 나. 및 다. 기계설비공사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 변경(2022.1.1. 시행)

3. 착공신고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①항 및 ②항 전단,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 별표5]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2020.7.10.]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2020.7.10.]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의 공사에 대한 시공신고 후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다.

건축물의 공사 시에 그 공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도 같이 포함되어 공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업자는 명확한 공사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공사의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보함으로써 공사의 시작 단계부터 적정·적법한 소방시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착공신고 대상의 소방시설 공사 (시행령 제4조)

1) 소방시설의 신설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 포함),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 소화용수설비(소방화용수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의 소방시설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제어반

라) 감시제어반

나. 착공신고 (시행규칙 제12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

-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 4) 설계도서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다.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1) 중요한 변경신고 대상
 - 가) 시공자
 - 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2)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사감리결과서에 포함하여 완공 검사시 제출
- 3) 변경신고절차

공사업자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포함]에 변경이 있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라. 착공, 변경신고 처리

-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등급,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완공검사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40조]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서나 부분완공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완공검사란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가 법령상 또는 화재안전기준상 적정·적합하게 설치·공사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완공검사에 대한 규정은 방재설비라는 소방시설의 특성상 명확·적정·적법한 설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에 하나이다.

완공검사는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실제 사용 시에 화재 등 각종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이며, 확인 후 합법적으로 설계와 동일하게 설계되고 각종 소방법령상에 적합한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법령상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가. 완공검사 방법 (시행규칙 제13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모든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기에는 소방행정력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등록이라는 적정·절차를 거친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의한 공사감리업무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감리자를 지정하여 소방공사를 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보고하는(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함으로써 관할 소방력 부족을 보충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권한을 주어 책임 하에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소방상 안전이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리결과보고서 대로 공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의한 완공검사

가) 대상: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로서 그 공사

가 법 제13조에 의하여 착공신고 대상인 소방시설공사

나) 방법: 관계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완공검사를 행한다.

다) 신청자: 소방시설공사업자

2) 감리결과보고서로서 같음

가) 대상: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방법: 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 유무를 파악함으로써 완공검사에 같음

다) 신청자: 소방시설공사업자

3) 감리결과보고 접수 후 현장 확인 (시행령 제5조)

가) 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등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시설

나) 방법: 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관계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 적정공사 여부 확인 및 감리결과보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나. 부분완공검사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별 임시사용승인 및 준공 등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소방서장이 건축물 부분별로 연동

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 조건: 소방대상물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써 전체시설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신청한 때

다. 완공검사 증명서

1) 완공검사증명서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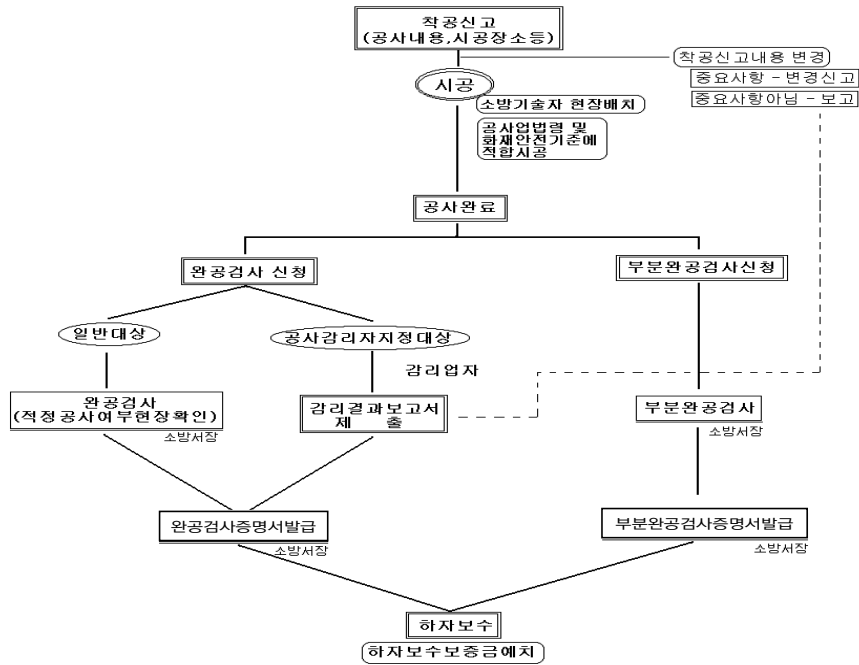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는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각종 소방법령상 적합하며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하여 이를 공적으로 증명 하는 관할 행정기관의 공증서라 할 수 있다.

- 2) 신청주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행한 공사업자
- 3) 발급주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며, 완공 검사를 행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4) 발급대상: 소방시설공사업자

라. 완공검사증명서의 소방법령상 의의

- 1) 소방시설공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의 인정
- 2)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서로 같음
- 3)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허가 등을 할 수 있는 법정서류
- 4) 감리결과보고서가 적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증
- 5) 소방시설 설계가 적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증
- 6) 소방법령상 적정, 적법한 소방대상물로서 사용하여도 됨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증

5. 착공신고와 완공검사 흐름도



[그림 2-4] 착공신고와 완공검사 흐름도

6. 하자보수 등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7.20.>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40조]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5.7.20.>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등록절차를 두고 있으며 착공신고, 완공검사신청, 감리 하에 시공 등 각종 세부절차를 통하여 적정 소방시설 공사를 담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소방시설의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법령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치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의 공사시 책임시공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가. 하자보수 대상 및 보증기간 (시행령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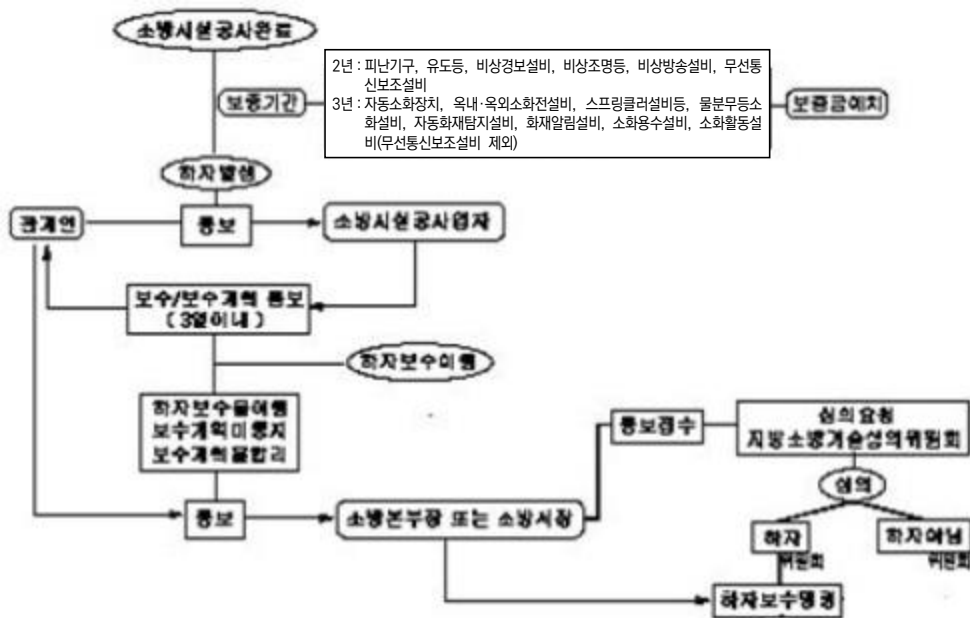
-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2)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3년

나. 하자시 보수절차

- 관계인의 하자발생사실 통보(공사업자) → 공사업자의 보수 또는 보수계획서 통보(3일 이내) → 보수불이행 또는 보수 계획 불합리 및 보수계획 미통지 →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심의 → 보수불이행 또는 보수 계획 불합리 및 보수계획 미통지 인정 →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명령

다. 하자보수보증 흐름도



[그림 2-5] 하자보수보증 흐름도

제3절 감리

소방시설공사법 제3장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1절은 설계, 제2절은 시공, 제3절은 감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절의 소방공사감리업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다.

본 절은 가장 먼저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감리업자의 지정, 현장에의 감리원의 배치 및 감리업자 지정신고에 대한 사항과 감리 중 시공에 있어서의 위반사항 적발 시의 조치사항과 감리가 종료되었을 때 감리결과 보고서의 제출까지 감리를 시작하여 감리가 종료할 때까지의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다.

1. 감리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 위반하여 감리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6조]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1. 6. 10.] 제16조

감리에 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갖춘 감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수행하여야 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다.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공사 외에도 설계업자가 설계한 설계도서까지 적정·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한 시공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본 조는 감리업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리업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감리업자의 업무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 및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외에도 소방시설설계도서의 적합성까지 검토할 수 있음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의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감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다.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3.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시행령 제8조)

가. 조건: 일반소방대상물 보다는 특히 보안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

나. 대상: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0호의 시설(시행령 제9조)

원자로냉각계통시설, 계측제어계통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원자력 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방사선관리시설, 원자로격납시설, 원자로안전통제시설 등

4. 감리의 종류 및 방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3)

종류	대상	방법
상주 공사 감리	1.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상주 공사감리에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종류	대상	방법
일반 공사 감리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5. 감리자의 지정 등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 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6조]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 별표5]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감리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40조]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자를 지정하여 감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만 감리대상의 소방시설 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관계인이 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명확한 감리를 확보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자의 선정은 관계인과 소방시설업자와의 사경제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바 관계인의 감리업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수·인계의 미비는 감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장애의 발생 및 업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조는 감리자를 변경할 때에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의 의무를 둔다. 동시에 업무의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의 적정·적법시공을 담보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 할 때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 2) 스프링클러설비등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3)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할 때
-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나. 감리자의 자격: 감리업자

다. 감리자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5조)

1) 지정신고

가) 감리자 지정신고자: 관계인

나) 신고기한: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다)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각 1부

(3)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신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서류첨부) 제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신고처리 절차

가) 처리기한: 2일 이내(신고인에게 신고수리여부 통지 : 법 제17조제4항)

※ 신고수리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 수리한 것으로 본다(법 제17조제5항)

6. 감리원의 배치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7조]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감리원이라 한다.

본 조는 소방공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감리업무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행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배치 의무와 그 세부적인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가.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시행령 별표4)

1)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나. 감리원 세부배치기준 (시행규칙 제16조)

1) 상주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인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 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일반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기간: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배치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 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은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의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공사감리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다. 감리원배치통보 등 (시행규칙 제17조)

1) 감리원 배치 및 변경통보 방법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보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

가)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한 감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1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시행령 별표1]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한 자,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자 또는 불이익을 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도 감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감리업자에게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어진 법률적 권한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감리업자의

권한행사로 인하여 관계인이 감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조는 부실시공의 방지와 적정·적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법률적인 권한의 부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감리업자의 권한 및 의무

- 1) 이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 및 지도·감독·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
- 2)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관계인에게 통지 및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 권한
- 3) 공사업자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불이행시 보고 의무
 - 가) 보고기간: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
 - 나) 보고기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다) 제출서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나. 관계인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제19조제4항은 감리업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한 적정한 권한의 수행을 담보하고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적법·적정한 감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법령이 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이라는 소방관련 법률의 취지와도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감리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인은 적법한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리업자에게 불이익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8. 감리결과와 통보

제20조(공사감리결과와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결과와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감리업자가 감리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그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의 종료 및 확인의 성격을 가지고 소방기관에서는 당해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감리결과보고서의 통보 및 제출은 감리업자의 명확한 감리업무 수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소방시설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법·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가. 감리결과보고서의 통보 및 제출 (시행규칙 제19조)

1) 대상

- 가) 서면통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 나) 보고서¹⁰⁾제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통보)서의 첨부서류

- 가)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 나)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 다)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는 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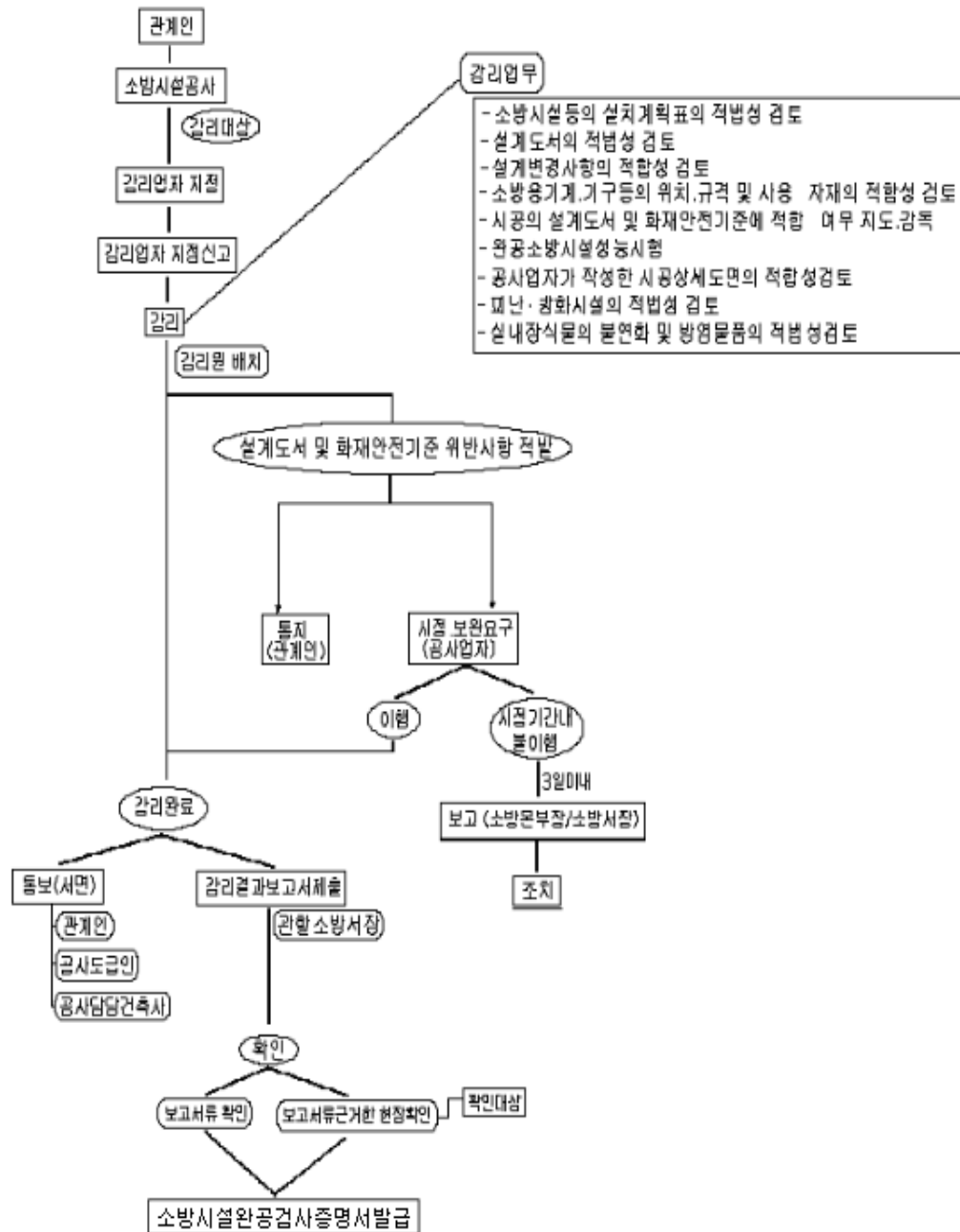
-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기간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나. 감리결과보고서의 기능

- 1) 감리업무의 종료를 통보 또는 보고
- 2) 완공검사 같음 (법 제14조)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완공검사라 하며 감리대상의 소방시설공사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서류인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서류를 토대로 관계소방공무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공사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기에 이를 근거로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9. 감리 전반에 관한 흐름도



[그림 2-6] 감리흐름도

10. 기타

가. 감리업자의 의무

- 1) 법 제16조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 2) 공사 중 감리업자의 변경 시에는 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할 의무
- 3) 공사감리 시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의무
- 4) 감리 중 법령 등에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인에게 통지 및 공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구 하여야 할 의무
- 5) 공사업자의 시정·보완 불이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의무
- 6) 감리 완료시 감리결과 통보 및 보고의무
- 7) 법 제31조에 의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권 행사를 수인할 의무

나. 감리와 관련한 관계인의 의무

- 1) 감리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시공 시에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
- 2) 감리자 지정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
- 3) 지정된 감리자 및 업무 중인 감리자를 변경할 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변경 신고 할 의무
- 4) 공사업자의 시정·보완요구 불이행에 대한 감리업자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감리업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무

제3절의 2 방염

1. 방염처리업자의 의무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

※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4절 도급

도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목적에 수급인의 기술적인 부족·무능 및 공사업무 수행의 부적절 등은 도급인 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적합하고 명확한 소방시설공사등(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방염)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은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를 하고 있으며, 수급인의 중간착취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의 제한 및 소방시설 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시의 금액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하도급 또는 특정의 사유(영업의 취소 등으로 공사업의 자격의 상실 등)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의 의무를 두어 관계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의 경우 관계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으로써 계약해지의 자유로 인한 소방시설공사등의 부실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업자는 적법 적정한 업무수행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공사의 장애 또한 방지하고 있다.

1. 도급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및 시행 2020. 6. 9.〉

※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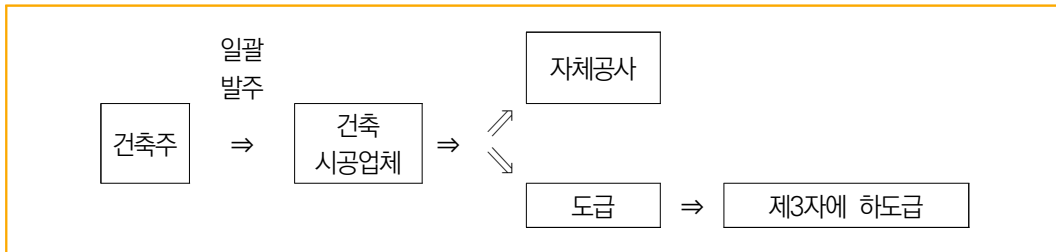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7조]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본 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에 의하여 일차 도급계약을 한 후에 그 설계,시공,감리,방염은 소방시설업자가 하는 경우 등이 빈발하여 이를 방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일정의 자격과 기술능력이 인정된 등록업체로 하여금 도급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계,시공,감리,방염토록 하여 도급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저가 낙찰의 여지를 없애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이고 명확한 소방시설공사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일반적인 소방시설공사의 발주형태



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시행령 제11조의 2) [개정 2024. 4. 2., 2024. 5. 7.]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 7)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8.4, 시행 2012.2.5]

본 조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노임(勞賃)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압류 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시행령 제11조의 3)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본 조는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서 불합리한 강요 등을 막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시행일: 2022. 4. 21.] 제21조의4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 3.]

[시행일: 2024. 1. 4.] 제21조의5

제21조의6(위반사실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는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수급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5. 하도급의 제한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6조] <개정 2020. 6. 9.][시행일: 2021. 6. 10.]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6조] <신설 2020. 6. 9.][시행일: 2021. 6. 10.]

③ 삭제<2014.12.30.>

[시행일 : 2021. 6. 10.] 제22조

일반적으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등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도급, 하도급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저가낙찰,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는 바로 국민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을 제한하고 또한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소방시설공사의 수주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차단하고 있다.

본 조의 규정은 적정·적법한 소방시설공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있다.

가. 하도급의 제한

저가낙찰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시공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제한을 하며 또한 하도급계약, 하도급의 해지, 하수급인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각종 수주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조의 이러한 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건설업¹¹⁾, 전기공사업¹²⁾, 정보통신공사업¹³⁾ 등에서도 도급 받은 공사를 원칙적으로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12)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

나.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시행령 제12조)

1)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2) 하도급의 범위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하도급의 통지¹⁴⁾ (시행규칙 제20조)

- 가) 통지의무자: 소방시설업자
- 나) 통지대상: 관계인 및 발주자
- 다) 통지서식: 소방시설등의 하도급통지서 1부
- 라)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안)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14)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7.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既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8.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9. 도급계약의 해지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본 조는 도급인이 일정한 경우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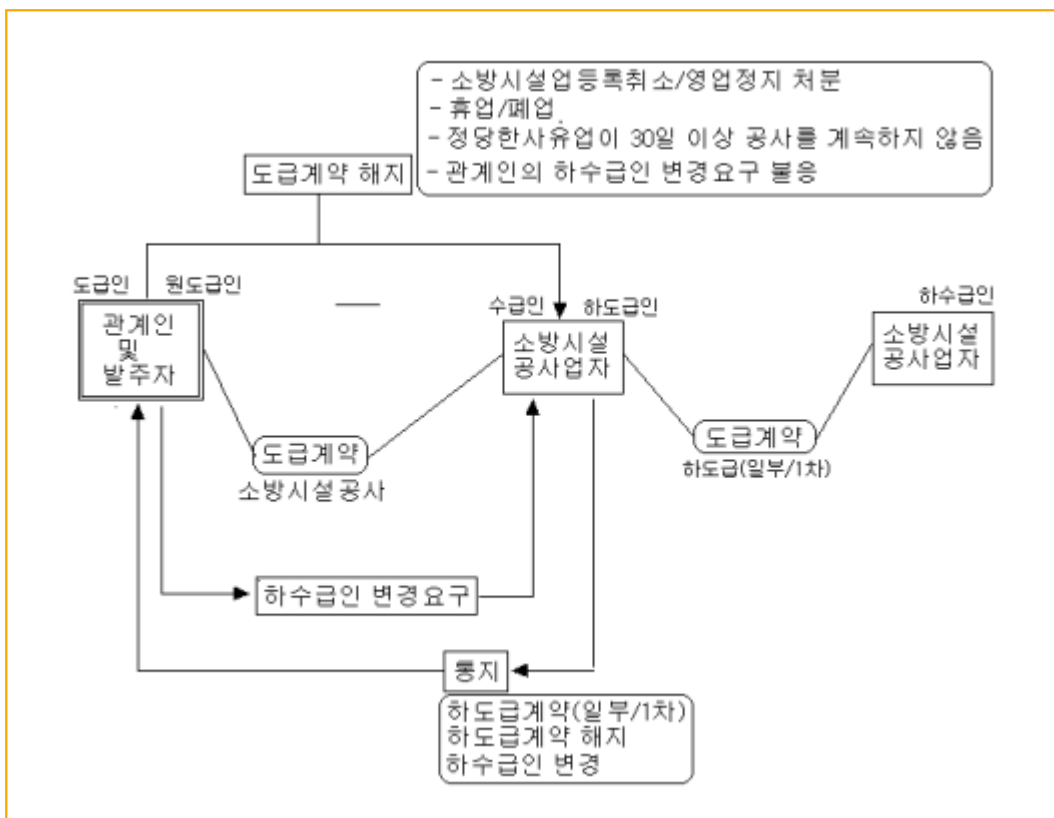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투명성의 제고와 공사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독 등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관계인에게도 본 조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으로써 공사업자, 관할 행정기관, 관계인등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적정시공과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

가. 해지사유

- 1)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경우

-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
- 4) 적정성 심사의 결과에서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0. 도급관련 흐름도



[그림 2-7] 도급관련 흐름도

제5절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는 1차 영업정지(3개월), 2차 등록취소 [시행규칙 별표1]

가. 의의

본 조는 동일인이 소방시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자, 법인일 경우 임원중 1인이 겸업 하거나 동시에 2이상 업종의 임원이 된 경우,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어서 동일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와 감리행위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와 감리를 겸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시공자의 편의대로 공사의 변경, 부실공사 방치 등)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고 있다.

나. 용어 정의

- 1) 기업집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 집단 또는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 2)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다. 공사의 제한 등

- 1)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할 수 없는 영업
 -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
- 2)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할 수 있는 영업
 -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
 - 소방시설설계 및 공사

제6절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의의

본 조는 소방시설업의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업무에 따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등으로써 관련된 소방기술업과 소방기술자들의 활동을 보호·육성할 수 있으며 각종 소방시설업의 도급계약 등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의 대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본 조는 위와 같은 취지로서 소방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각종 관련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¹⁵⁾이며 일반적으로 설계 또는 감리에 관한 비용에 있어서는 다른 물품과 같이 쉽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관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대가에 관한 사항을 제31조¹⁶⁾에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또한 설계 또는 감리 등의 관련사항

1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대하여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대가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나. 산정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중 다음 방식에 따른다.

-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절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신청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6)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절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 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2024. 1.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2.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시행일 : 2019. 2. 10.] 제26조의3

가. 의의

소방시설 공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소방시설 공사의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소방시설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시 공인된 기관(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경력·신인도(이하 “시공능력”이라 한다)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의 규정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를 위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발토록 하며, 공사업자가 당해 공사업의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를 수주 또는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을 유도할 뿐 아니라 내실 있고 적정·적법한 소방시설의 공사를 확보하고 있다.

나. 시공능력 평가공시 절차(시행규칙 제22조)

1)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제출(각종 증빙서류 첨부) 단, 제5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 신청,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도록 함.

2) 시공능력의 평가(시행규칙 제23조)

- 평가방법: 시행규칙 별표 4
-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 시공능력평가의 유효기간: 공시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3) 시공능력 공시 등

- 시공능력평가자는 평가결과를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
-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4)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

다.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시행규칙 제23조의2)

1) 영 제12조의8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 설계용역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3)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
- 4)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6)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6호의4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 1) 국가등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4의3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적힌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5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4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 등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별표 4의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 2) 국가등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제5장 소방기술자



학습 목표

1. 소방기술자를 이해함.
2.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을 이해함.

본 장은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으로, 소방기술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자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소방관련 법령에서 소방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일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소방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소방관련업의 수준을 향상함과 동시에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방지와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본 장은 소방기술의 향상과 일정수준 이상의 소방기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변화된 소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반하여 법 또는 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업무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과 소방기술자경력수첩(이하“경력수첩”이라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1. 의의

본 조는 자격부여규정으로서 자격부여규정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의 보유를 설정·공증하는 절차를 제도화 한 것이다.

소방기술자는 각종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자격인으로서 소방법령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바 이 법의 목적에 합치된 업무수행 및 관련 법령의 준수에 대한 의무규정은 당연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소방기술자의 적정업무 확보에 장애가 되는 자격증의 대여 및 이중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기술자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정한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그 자격자가 행하는 업무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공공적 필요에 의하여 자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본 조의 소방기술자에 대한 규정 또한 적정·적법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에 합헌성이 담보되어 있다 할 것이다.

2. 소방기술자

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기술자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인정한 소방기술자

3. 소방기술자의 의무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업무수행의 의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

다. 자격증 대여금지의 의무

소방기술자에 대한 인정은 개인의 일신전속에 관한 사항이므로 타인이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소방기술자의 인정제도 취지상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방업무의 수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를 통하여 소방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술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각종 업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적법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라. 이중취업 금지의 의무

소방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소방기술자로서 주어진 업무 외에 다른 영업을 함으로써 소방기술자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으며 또한 형식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바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취업금지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소방기술자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있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허용하여 과도한 규제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2절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⑤ 제4항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없다
-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1. 의의

본 조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방기술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한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에 따라 소방기술경력에 관한 수첩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대내적으로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대외적으로 전문자격임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제반과정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방시설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인력에 대한 기준을 소방기술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검증 및 인정토록 함으로써 인적·물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을 담보토록 하고 있다.

소방관련 기술자로 인정된 자에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수첩의 재발급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 등으로 그 인정자격이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된 다음날 자격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발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

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범위(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4의 2)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 소방시설 착공·감리·완공검사 관련 업무
 -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 상기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법령지원 및 연구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력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3. 자격수첩 발급 절차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및 소방기술인정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4. 자격의 정지·취소

소방기술자격자가 행하는 업무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공공복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무 및 자격의 인정 등을 법률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격자가 그 업무 등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인정된 자격을 철회하여 소방기술자의 법령준수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소방시설업 등의 업무에 배제함으로써 적정·적법한 소방시설공사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소 또한 이 법 제9조에서의 취소의 의미와 같이 인증 등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배제 하는 것으로 강학상의 철회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본 조의 자격취소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행정처분이므로 법률로서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자격의 정지, 취소 등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32조 에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가. 자격취소 또는 정지사유

- 1)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나. 필요적 취소사유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다. 자격 정지 취소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5)

[표 2-1]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규칙 제25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4항	자격 취소		
나. 법 제27조제2항의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8조 제4항	자격 취소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 제28조 제4항	자격 정지 1년	자격 취소	
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4항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해당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 취소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제3절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 의의

본 조는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소방기술의 향상과 실무상 발전된 소방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 민간 소방산업의 발전과 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기술을 향상시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본 조와 관련된 교육은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실무교육을 소방안전원에서 전담하였던 것을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기관을 여러 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또한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여 소방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권자의 의도가 있다 할 것이다.

2. 실무교육 (시행규칙 제26조)

가. 대 상 자: 소방기술자

나. 교육 횟수: 2년마다 1회 이상

※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실무교육기관

라. 교육통지: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일정계획을 수립 소방청장에게 보고 후 교육 10 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 실무교육의 시간·교육과목 및 수수료 그 밖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마. 교육수수료 사항의 기재 등

1)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교육수수료 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

2) 실무교육기관의 장은 소방기술자실무교육 수료자명단을 교육 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

3. 실무교육기관

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1) 비영리 법인
- 2) 기술인력 및 장비 (시행규칙 별표 6)

가) 조직구성

-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지부 설치
- (2)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
- (3)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다) 시설 및 장비

- (1) 사무실: 바닥 면적이 60㎡ 이상일 것
- (2) 강의실: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는 것
- (3) 실습실·실험실·제도실: 각 바닥 면적이 100㎡ 이상
- (4) 교육용 기자재

나.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정관 사본 1부

나) 대표자·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라) 교육장 도면 1부

마)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나)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절차

소방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서류검사 및 현장 확인(미비 시 15일 기간 내 보완가능)-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교부- 관보공고

4) 지정사항의 변경

다음 각호의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

가)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나)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다) 교육기관명칭 또는 소재지

다. 휴·폐업 신고 등

1) 실무교육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휴업·재개업·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소방청장은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지정서를 회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장 소방시설업자협회



학습 목표

1.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이해함.
2. 협회의 설립, 업무 등을 이해함.

소방시설업자의 협회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품위 유지 및 기술향상, 소방시설업의 기술개선, 기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7.23. 법률 개정을 통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의 규정을 근거로 2011.12.28. 특수법인 설립인가하였으며, 주요 업무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업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제1절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시행령 제19조의 2)

- 가. 설립인가 절차: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 한다.
- 나.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감독 (시행령 제19조의 4)

- 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2) 회원의 가입·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7장 보 칙



학습
목표

1. 보칙을 이해함.
2. 보고의무, 청문, 행정소송, 손실보상, 수수료, 권한의 위임,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등을 이해함.

총칙이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 규정의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총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법제상 보칙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보칙규정은 “별칙” 바로 앞부분에 두게 되는데, 장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칙”이라는 장을 둔다. 일반적으로 보칙에 규정되는 내용으로는, 보고의무(자료제출의 요청), 출입·검사 또는 조사, 청문, 행정심판·행정소송, 손실보상,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조정 등을 두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 행정처분시 청문에 관한사항, 각종 권한의 위임·위탁,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감독

제31조(감독)

-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

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①항 및 ②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8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

1. 의의

일반적으로 출입검사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은 행정기관이 그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나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종으로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의 적정·적법한 운영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 및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사업자 또는 관계인의 적정·적법한 사업 및 영업을 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본 조는 소방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있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사업이나 영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명령을 하거나 소방시설업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소방시설업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확한 감독권 행사로 인하여 소방시설업의 적정·적법사업 및 운영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한편으로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를 위하여서는 관계 공무원이 질문이나 서류 등의 검사를 위하여는 현장을 출입하여야 한다. 현장 출입에 의한 질문, 검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개인(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인(受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보고 및 서류제출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본 조는 정당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원이 되고 있다.

2.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 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 나. 이 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다. 이 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인정 업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소방시설업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3. 감독권 행사의 종류

-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 나. 소방시설업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는 출입검사권
- 다.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질문권

4. 감독권 행사의 범위

본 조에서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간적인 제한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출입 장소와 시간·검사대상의 장부나 시설 등에 대한 검사 시에도 그 정도는 이 법률의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¹⁷⁾ 부당하게 사인(私人)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의무

- 증표제시의 의무
-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6. 기타

가. 질문권과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감독권 행사에 대한 거짓보고, 거짓자료제출,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 하지만 질문에 있어서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답변을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둘 경우 “모든 국민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질문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벌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방관련 법률에서의 유사규정

본 조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감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보고·검사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17)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8)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절 청 문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의의

법률상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¹⁹⁾ 즉 청문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쟁송의 재결, 처분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거나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관계인의 권익의 보호 및 행정의 민주화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이 법에 근거한 처분중 상대방에게 중대한 권익의 침해(등록의 취소 등)가 있는 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방행정의 일방적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처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대상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해당 처분 전에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할 경우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되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2. 청문대상

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

나.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

19) 행정절차법 제2조

3. 청문의 절차

본 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문을 필요한 절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문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²⁰⁾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는 청문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그 세부사항은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20) 행정절차법 제27조 ~ 제37조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委讓)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기관(受任機關)은 당해 행정관청의 보조기관·하급기관임이 통례이다.

이때 위임기관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며 이는 법이 정하는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일종의 사무 재 배분이므로 법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본 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을 하고 있다.

2. 위탁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는 신탁관계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경제적 능률성이 증시되는 분야 중 민간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을 주로 한다.

이러한 위탁도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의미함으로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바 본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3. 업무의 위탁

가.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

-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나. 소방청장 또는 시도시자는 소방시설업자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다.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제34조의 2(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4.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이 법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에 대하여 금품의 수수(收受)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라 한다. 본 조는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등에게 형법 제12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이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대상 기관 및 단체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기관
-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제4절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시행일 : 2019. 2. 10.]

1. 의 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행정주체가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정 행위(이 법에서의 각종검사·허가·등록 등)를 함에 있어 그 역무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요금”을 수수료라 하며, 교육비라 함은 소방기술자가 이 법령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시 그 교육에 상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은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허가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이 국가에 대한 공권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소방행정기관은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특정의 역무를 제공함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의 개념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요금의 개념으로 수수료 및 교육비가 있으며, 이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및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하고자 하는 자, 소방시설

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 등의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방기술자가 실무교육기관에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수료 및 교육비

가. 수수료 납부대상

이 법령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나. 교육비 납부대상

이 법령에 의하여 소방기술자로서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다. 납부방법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제8장 벌 칙



학습 목표

1. 벌칙을 이해함.
2. 징역과 벌금형, 양벌규정, 과태료 규정을 이해함.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 외에 의무의 불이행 또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본 장 규정중 제35조, 제36조는 징역과 벌금형을 제37조, 제38조는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는 양벌규정, 제40조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심리강제)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범 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 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된다.

2. 행정벌의 종류

가. 행정형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2023. 1. 3.>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시행일 : 2024.1.4.]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자
 -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1. 9. 10.]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상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별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4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삭제 <2015.7.20.>

-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의2. 삭제 <2018. 2. 9.>
-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 4. 20>
- 12. 삭제 <2011. 8. 4.>
- 13. 삭제 <2013. 5. 22.>
-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3의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3.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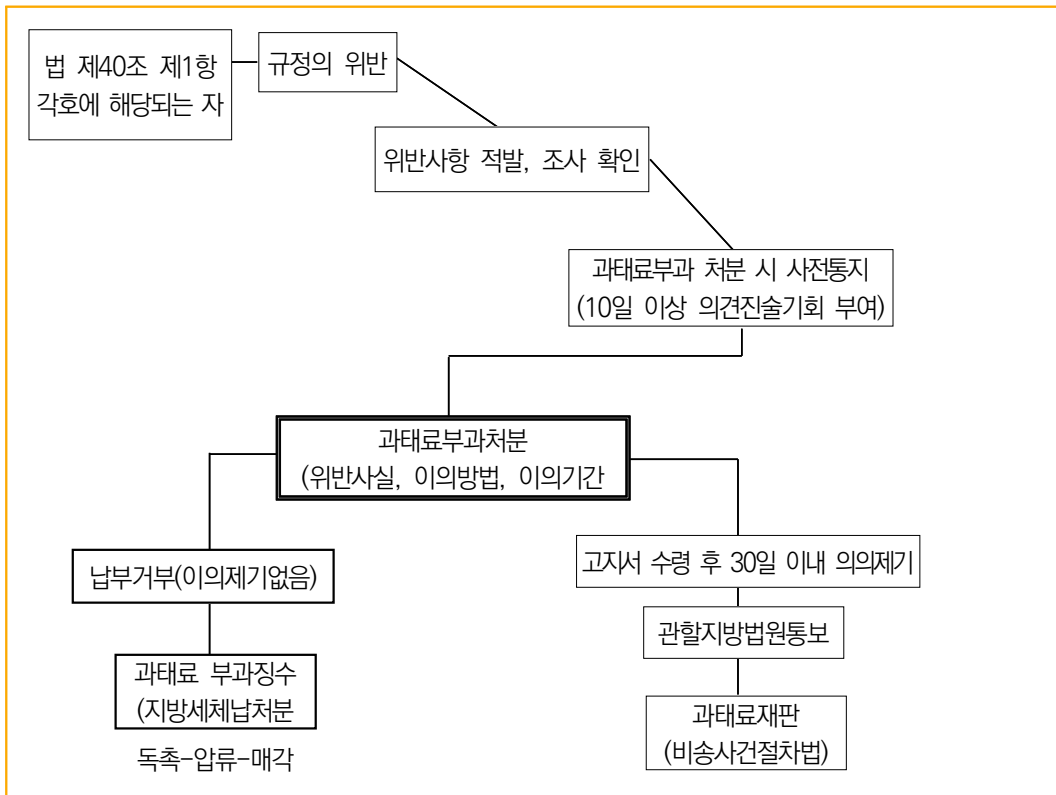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벌칙과의 사이에 누범(累犯) 관계도 생길 수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제4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과태료부과절차



[그림 2-8] 과태료 부과 절차도

5.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법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 재산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종래 형법이론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부정설(통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인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기업범죄, 공해죄 및 일반경제범죄의 영역에서는 법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형벌은 형사벌과는 달리 정책적인 견지에서 행정상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위법 상태의 발생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방적 또는 위하적 요소가 많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행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도 행정형벌은 윤리적 요소가 비교적 약하며 합목적적·기술적 요소가 강한 특수성을 강조하여 법인처벌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실제로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의 자연인만 처벌하여서는 법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양벌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법인이 이 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법 또한 여느 행정법과 같이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6. 행정벌과 행정처분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병과 할 수 없으나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행정벌의 적용은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일반통치권에 기한 벌이며 행정벌은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인 관계로 위반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이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해당여부·과태료처분 해당여부 및 벌칙 규정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



학습 목표

1. 부칙을 파악함.
2.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이해함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부칙은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 칙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시행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을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기간을 두어야 하며, 또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시행일 즉 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다른 소방법령과 동일하게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1년으로 두어 하위법령의 정비에 따른 시간과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경과조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가 새로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전의 조직이 폐지됨으로써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에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구 상태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경과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법률 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 법은 종전의 소방법과 관련하여 도급, 처분,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한 법률을 폐지하고 소방기본법과 같이 제명을 달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전문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상당히 많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실무의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이 많을 경우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입법 낭비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방식을 부칙에서 사용하면 다른 법률을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부칙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3

PART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학습 목표

1. 용어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3.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4. 구조·구급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5.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제1절 총칙

1.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8.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을 말한다.
11. “119구조건”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건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기술경연대회)

-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119항공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대상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구조·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1.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2조(구조·구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중앙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

제7조 【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구조·구급 집행계획(이하 “시·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 “시·도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도의 세부 집행계획
 2.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 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
 3. 법 제26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절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1.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대(隊) 이상 설치하

되, 소방서가 없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 삭제(2021.7.6.)

[시행규칙]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도
 3.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소방서 관할 구역
-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제9조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 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국제구조대·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4. 4. 23.〉
- ② 소방청장은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국제구조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국제구급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8조(국제구조대원·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 4. 23.〉

1. 국제구조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붕괴건물 탐색 및 인명구조,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엔재난평가조정요원 교육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응급처치, 기초통신, 구조 관련 영어, 국제구조대 윤리 등의 내용

2. 국제구급대원

가.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해외 응급의료체계 등의 내용

나.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 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의 내용

-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대응능력 및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시행령] 제9조(국제구조대원·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국제구조대·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① 법 제9조제7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개정 2024. 4. 23.〉

1. 국제구조대

- 가. 구조장비
- 나. 구급장비
- 다. 정보통신장비
- 라. 측정장비 중 공통측정장비 및 화생방 등 측정장비
- 마. 보호장비
- 바. 보조장비

2. 국제구급대

- 가. 구급장비
- 나. 정보통신장비
- 다. 보호장비
- 라.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장비 및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급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도
 - 2.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⑤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감염병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구급대원은 이송하려는 응급환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동승(同乘)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삭제

4.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0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5.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 ③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현재 상태 및 이송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전파·보고해야 한다.
- ④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한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 ①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응급질환 관련 상담 및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등 필요한 조치 제공 및 업무 지원
 3.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4.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지원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에서 재외국민등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응급의료서비스
- ② 소방청장은 구급상황센터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5. 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3 【119구급차의 운용】

-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운용기준)

-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 119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 【119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 등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구조대와 구급대를 통합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119구조구급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구조대상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① 소방청장은 119항공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규칙] 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2024. 10. 4.〉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도
-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개정 2024. 10. 4.〉
 1.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삭제 〈2024. 10. 4.〉

[제목개정 2021. 1. 21.]

[시행령]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시행령]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 ① 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계기 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 ②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탑승자는 119항공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항공기의 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둔다.

[시행령]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공기 사고(「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각각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이 조에서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조사단의 편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8.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조정·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통제·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운영)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한다.
 -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2.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항공운항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운항관리시스템이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운영)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9. 119항공정비실의 설치·운영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기록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보급 기관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119구조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의5(119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의 설치·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의 설치·운영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 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4절 구조·구급활동 등

1. 구조·구급활동

제13조 【구조·구급활동】

-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처치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청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 ① 구조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구급대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급대상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6.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 ③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대상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구조·구급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경우 구조 또는 구급을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

- 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구조·구급활동의 위한 긴급조치

제15조 【구조·구급활동의 위한 긴급조치】

-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손실보상)

- ① 소방청장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

제16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 ① 소방청장 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 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1.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2.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를 인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때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시행규칙】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 ① 소방청장 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구급활동과 관련 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인계는 구조·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구급상황 발생 현장 에서 인도·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5. 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7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18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

-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구조된 물건에 대한 처리)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구급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된 물건”이라 한다)을 인계받은 경우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청구권인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나타나 그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구조된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물건이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조된 물건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건일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각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급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구조된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7.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19조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 ① 구조·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상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상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8.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 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팩스·전화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고,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역의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5조(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 ① 소방청장 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9. 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1조 【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 ①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구조대상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0.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단말기로 구조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관리)

-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제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9조(구조·구급증명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구급자”라 한다)
 2. 구조·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 ②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구조·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제23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①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유형별 안전관리 기본수칙과 행동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 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유해물질등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119감염관리실의 규격·성능 및 119감염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전문개정 2024. 10. 4.]

구조·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유해물질등에 노출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2.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염 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시행규칙]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 ① 소방청장 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신규채용 된 소방공무원을 구조·구급대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결과를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의 결과 구조·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구급대원으로서의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방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해당 구조·구급대원이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시행규칙]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소방청장 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12.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국적 또는 지역적 재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등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또는 진료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 ③ 소방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이송하는 구조·구급대원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감염 방지 시설·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4. 7. 2.]

13. 감염병 환자등의 통보

제23조의3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본조신설 2024. 7. 2.]

-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

환자등과 관련된 감염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다목 또는 하목에 따른 결핵, 홍역 또는 수막구균 감염증
 3.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질병관리청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
 2.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정보시스템, 서면 또는 팩스를 통하여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통보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염병과 관련된 구조·구급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 외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과 관련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소방청장등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잠복기가 긴 감염병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24조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제5절 보칙

1.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제25조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7. 21.>
-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7. 21.>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3.>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7. 21.>

[시행규칙]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 21., 2022. 7. 21.>

1. 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가. 해상생환훈련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 구조·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 구조·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시행규칙]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7. 21.>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

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23. 3. 31., 2024. 10. 4.>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전문교육사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2023. 3. 31.>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운영·이수·재교육 등과 구급전문교육사의 선발·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8. 1., 2023. 3. 31., 2024. 10. 4.>

2. 구급지도의사

제25조의2 【구급지도의사】

-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1명 이상의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로 구성된 의료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 단위로 각 기관별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7. 14.>
- ② 구급지도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접수된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3.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4.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등에 대한 평가
 5.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6.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7. 그 밖에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지도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

지도의사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급지도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⑥ 소방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또는 위촉 기준, 업무 및 실적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26.]

[제27조의2에서 이동 <2024. 7. 2.>]

3. 구조·구급활동의 평가

제26조 【구조·구급활동의 평가】

-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구조·구급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관리
 2.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수준
 3.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4. 구조·구급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 ② 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소방본부장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도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조·구급정책협의회**제27조 【구조·구급정책협의회】**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 ②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중앙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 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중앙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 정책협의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 ⑥ 중앙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령] 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 ① 중앙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 ②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중앙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앙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31조(시·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시·도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정(消防正) 이상 소방공무원
 2.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 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시·도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 정책협의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 ⑥ 시·도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령] 제31조의2(시·도 정책협의회 위원회 해촉)

시·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시·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정책협의회”는 “시·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시행령]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5.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②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연령·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대상별 교육 지도안 작성 및 실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등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절 벌칙

1.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과태료

제30조【과태료】

-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2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1)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 ③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30조 제1항	200	400	500
나.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	500		



학습정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목적: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구조: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
- 119구조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
- 구조·구급 기본계획: 소방청장은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
-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
-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

-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구조대상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
- 구조·구급활동: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함
- 구조·구급활동의 위한 긴급조치: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음
-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 소방청장 등은 구조활동으로 구조된 사람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그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하고,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계하여야 함
- 구조된 사람의 보호: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겐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구조·구급대원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함
- 구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구조·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함

4

PAR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관련법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걱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医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医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 ①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 ① 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동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한다.

- ③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응급의료 중단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시행규칙] 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医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医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등)

-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
-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

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4. 소방청장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6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시·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위원회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의2(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시행령]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육·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당해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②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제6호·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활용할 수 있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중앙응급의료센터”라 한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15조의2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의2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재정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중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응급의료기관등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③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영역별 또는 평가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등의 업무 개선을 위하여 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절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제5장 재정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시행령] 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시행령] 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2.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시행령] 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

- ① 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시행령] 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

- ① 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 ③ 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 [법률 제9305호(2008.12.3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1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1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医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시행령] 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의 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시행령] 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령]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 (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로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 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삭제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다. 삭제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미수금 심사, 대지급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

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2조의3 【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제24조 【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공급,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물품의 관리
3.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삭제 <2015. 1. 28.>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23조의 2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시행령] 제23조의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운영
2.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3.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그 밖에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하는 업무

[시행규칙] 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영실적은 분기별·관할지역별로 운영실적·문제점 및 대책 등을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규모·시설·의료기구 및 장비
 - 2. 구급차등의 편성·장비 및 운영인력
 -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 4.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 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하는 사항

-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응급환자의 수용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등 응급医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医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 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
-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③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 ④ 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医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

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1부
 2. 권역외상센터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외상환자(이하 “중증외상환자”라 한다)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1부
 4. 중증외상환자 진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별표 7의2의 요건과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과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이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같은 해에 시행하며,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
- 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⑥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 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분류·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 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4 (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1.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3.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

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
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
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9조 (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신경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②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
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 ①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 ②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이하 “전담의사”라 한다)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의 지정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 이상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범위가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직의료권역을 정한 경우
- 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개시일 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31조의3 또는 제35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개정일:2021.12.21.시행일:2022.12.22

- ①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 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장 응급구조사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시행규칙] 제24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규칙] 제25조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 ②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1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 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 ①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2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③ 응급구조사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6조에 따라 시험관리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인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 ①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다.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시행규칙] 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① 응급구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제3호의 경우에는 다시 찾은 자격증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삭제
3. 자격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자격증을 찾은 경우

② 삭제

제36조의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했을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①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응급구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 ①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
 - 2.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의 제한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
 - 3.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 4. 법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의 작성·제출 방법
 -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상태 분류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업무지침을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도 하여금 그 업무지침을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직업윤리
 -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2. 보수교육의 대상: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

⑦ 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⑪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2. 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
3. 보수교육 시설·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
4. 보수교육의 효과성

제43조의 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5와 같다.

제44조의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후를 말한다)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통보의 경우: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부착용 통보확인증 발급

2. 신고의 경우: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부착용 신고확인증 발급

④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삭제 <2017. 12. 1.>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 1부(변경 신고에 한정한다)

2.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1부(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박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부착용 통보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⑨ 부착용 통보확인증이나 신고확인증 및 부착용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10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 운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월 31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의12

서식의 구급차등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관리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 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차량 속도,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거리를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에 한정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 구급차등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장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 이용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 ③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④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의2와 같다.
-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관리 및 필요한 조치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① 제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령] 제26조의4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시행령] 제26조의5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시행규칙]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14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15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

-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

-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각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 사항, 제31조의4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 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 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응급환자의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출동 및 처치 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

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증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증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증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50조 【지도·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시행령] 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3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이송업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시행령] 제27조의3 (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

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삭제 <2006. 7. 3.>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정관
 - 나. 임원의 명부 1부
 -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무소 및 분사무소(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영업지역(시·군·구 단위)
3. 구급차의 총대수·종별·형식·연식, 상용차 및 예비차의 구별
4. 삭제 <2015. 1. 8.>
5. 지도의사의 선임현황

④ 시·도지사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부착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의 변경 내용을 고쳐쓴 후 발급해야 한다.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⑥ 응급환자이송업자는 부착용 허가증을 구급차등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⑦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부착용 허가증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52조【지도의사】

- ① 구급차등의 운전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구급차등의 운전자에 따른 지도의사의 수(數)와 업무 및 선임(選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 ① 구급차등의 운전자(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중에서 1인 이상을 지도의사로 선임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하여진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
 2.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이송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영업의 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 ① 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삭제 <2008.6.13>
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 :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54조의2 【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 3의2.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23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37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용도: 2014년 1월 1일
6.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에 따른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5항 및 별표 17에 따른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35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 12. 31.>
5. 삭제 <2020. 12. 31.>
6. 삭제 <2020. 12. 31.>

제56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제57조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령]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응

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60조 【벌칙】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 4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제6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63조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법령 IV

발 행 일 2026년 1월

발 행 중양소방학교

인 쇄 처 동은디애펜

